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
주요내용 설명자료

2019. 1.

고용노동부

<공포일>

○ 2019년 1월 15일, 법률 제16272호

<시행일>

○ 이 법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함

- 다만,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 수립의무 관련 개정규정(제14조)은 2021년 1월1일부터 시행하고
- 물질안전보건자료 관련 개정규정(제110조부터 제114조까지)은 2021년 1월 16일부터 시행함

차 례

Ⅰ. 법의 보호대상 확대 ····· 1

1. 법의 목적 및 산업재해 범위 확대 ····· 3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 ····· 6

3.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조치 ····· 11

Ⅱ. 법의 적용범위 명확화 ····· 15

4. 법의 적용범위 ····· 17

Ⅲ.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도급 제한 ····· 21

5. 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 23

6. 도급의 승인 ····· 32

7. 도급의 승인 시 하도급 금지 ····· 35

8. 적격수급인 선정 의무 ····· 36

Ⅳ. 산업재해 예방 책임 주체 확대 ····· 39

9.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수립 ····· 41

10.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를 부담하는 도급인 확대 ····· 44

11. 안전보건총괄책임자 ····· 50

12.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 52

13.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 ····· 56

14.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 ····· 59

15. 가맹본부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 62

Ⅴ. 작업중지 강화 ····· 71

16. 근로자의 작업중지 ····· 73

17. 사업주의 작업중지 ····· 80

18.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조치 ····· 83

Ⅵ. 건설업 산업재해 예방책임 강화 ····· 89

19. 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 91

20. 기계·기구 등에 대한 건설공사도급인의 안전조치 ····· 100

21.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등록 ····· 102

Ⅶ.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영업비밀 심사 ····· 107

22.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 ····· 109

23.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 115

24.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부 비공개 승인 등 ····· 118

25.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정보 제출 등 ····· 124

Ⅷ. 그 외 유해·위험 방지조치 등 ····· 127

26. 위험성 평가의 실시 ····· 129

27. 역학조사 ····· 132

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재 강화 ····· 135

28. 근로자 사망 시 사업주 처벌 강화 ····· 137

29. 도급인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 위반 시 처벌 강화 ····· 139

30. 양벌규정 ····· 142

31. 형벌과 수강명령의 병과 ····· 144

<붙 임>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법률 제16272호) ····· 147

법의 보호대상 확대

1. 법의 목적(제1조) 및 산업재해 범위(제2조) 확대

1. 개정배경

□ 현행규정

○ **법의 "목적 규정"**은 **법령의 입법취지**를 명확히 밝혀 그 법령의 각 조문을 해석하고 집행할 때 **개별 조문의 구체적인 의미**에 대한 **해석 방향을 제시**하는 **기능을 수행**

○ 「산업안전보건법」은 **그 목적**을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으로 규정

*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함(법 제2조제1호)

- **법의 보호대상**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한정**하고 있으며

- **산업재해의 정의**에서도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음

□ 문제점

○ **최근 변화된 노동력 사용 실태**에 맞게 근로계약관계에서 벗어나 **다양한 고용형태의 노무제공자**를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으나,

-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가 아닌 자**는 원칙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대상**에서 **제외** 됨

- 특히, 고용관계가 불확실한 골프장 캐디, 학습지교사, 화물트럭 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음식점 배달대행원** 등 **플랫폼 종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보호**의 **사각지대**임

- 이에, 사업을 영위하면서 **위험을 창출**하고 이를 통해 **수익을 얻는 자**가 근로자 외에도 위험에 노출되어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의무를 부담**하는 **입법체계**를 갖추기 위해 **우선적으로 법의 목적**을 **확대**할 필요

2. 개정내용

○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을 확대**함

-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 →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제1조)

○ **산업재해 정의**를 **"근로자" →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질병에 걸리는 것으로 확대함(제2조제1호)

3. 외국 입법례

□ 독일

【 산업안전보건법 】

제1조 목적과 적용범위

이 법률은, 보호조치를 통해 근로제공시 **취업자의** 안전 및 건강을 확보하고 개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규정

⑵ 이 법에서 말하는 취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근로자 2. 직업교육을 받고 있는 자
3. 가내근로에 종사하는 자 및 그와 동등한 자를 제외한, 「**노동법원법**」 **제5조 제2항의 근로자와 유사한 자**
4. 공무원 5. 법관 6. 군인 7. 장애인을 위한 공장에 취업중인 자

4.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법 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담당부서	산재예방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대원	연락처	044-202-7697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제77조)

1. 신설배경

○ 기업들은 **비용절감, 인사관리 효율화, 디지털 산업의 발달** 등 다양한 요인에 기인하여 **직접고용 방식**에서 외주화 등 **비전형적인 고용형태**로 **전환하고 있음**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그 중의 하나이며, 캐디·보험설계사 등 종전의 특고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배달의 민족 등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배달 등의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 종사자**도 증가 추세

- 그러나 이들은 **전형적인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보수수준 등 업무여건은 취약함에도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법의 보호는 거의 받지 못하는 상태**

* 근로기준법이 정한 법적 보호를 받게 되는 **근로자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그 사람이 상대방과의 **'사용종속관계' 아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기준법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 **사업주에 대하여 독립적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노무제공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2016. 11. 24. 선고 2015헌바413 결정)

○ 그러나, 헌법재판소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지위, **노무제공 방법, 경제적 종속성** 등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은 그대로 적용될 수 없지만 **별도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헌법재판소 2016. 11. 24. 2015한바413 결정)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사업주에 대하여 경제적종속성을 가지고 있고, 타인을 이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며, 주로 특정한 1인의 사업주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달리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 사업주의 특정한 지시나 지휘·감독에 구속되지 않는다. 말하자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자영인의 중간적 위치에 있는 노무제공자라고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 2016. 11. 24. 선고 2015헌바413 결정)

- **영국, 독일**에서도 보호의 방법과 정도는 달리하고 있지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산업안전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음**

- 아울러,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도 근로자가 아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개념을 정의**하고, 일부 직종에 대하여 법의 적용대상하고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한다)의 노무(勞務)를 제공받는 사업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본다.

1.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2.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 이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재해발생 빈도가 높고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으로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을 규정한 것을 고려하면, 이들에 대해서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보건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전제되는 것임**

- 따라서,「근로기준법」의 근로자 여부에 관계없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산업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

2. 내용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업**이 **매우 다양**하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사이에서도 **노무제공의 방법, 성격이 상이**하고 **직종별 업무 특성에 따라 위험의 내용과 정도도 다르므로**

- 안전 및 보건조치를 **일률적으로 법에 규정**하기 **어려움**을 감안하여 **구체적인 안전 및 보건조치**에 대해서는 **하위법령**에서 **규정**하되, **그 근거규정**을 **마련**함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종속성,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직종**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받는 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의 의무를 부여**하되, **그 교육내용** 등은 **하위법령에서 구체화**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업무내용이 통상의 근로자와는 차이가 있어 근무형태 및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직종별 별도의 교육시간(또는 주지의무) 및 교육내용을 하위규정에서 규정할 필요

- 사업주의 비용부담에 따른 **제도 정착의 애로를 해소**하고, **정부 지원**을 통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부 지원 근거**를 **마련함**

- 한편,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안전보건교육 의무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3.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법 률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증진시키는 한편,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시책에 따라야 한다.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① 사업주(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같다)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고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따라야 한다.

1.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킬 것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할 것 3.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할 것	1.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제6조(근로자의 의무) 근로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기준 등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지켜야 하며, 사업주 또는 근로감독관, 공단 등 관계자가 실시하는 산업재해 방지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6조(근로자의 의무) 근로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켜야 하며, 사업주 또는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 공단 등 관계인이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 신 설 >	제77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 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음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한다)의 노무를 제공

	받는 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할 것 2.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3.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의 유지·증진에 사용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담당부서	산재예방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대원	연락처	044-202-7697

3.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조치(제78조)

1. 신설배경

○ **최근 플랫폼에 기반한 공유경제의 확산으로 노무 제공 계약 방식에** 상당한 변화 초래

- 특히, 미국의 우버, 우리나라의 배달의 민족 등 **배달앱을 사용**하는 **업종이 빠르게 확산**

○ 한편, 이륜자동차에 대한 「도로교통법」 등 다양한 안전규제에도 불구하고 **이륜자동차와 관련한 사고발생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

년도	발생건수(건)	사망자수(명)	부상자수(명)
2012	10,415	405	12,441
2013	10,433	413	12,379
2014	11,758	392	13,899
2015	12,654	401	15,172
2016	13,076	428	15,773

- 특히, 서비스업 가운데 **5년간 업무상 사고사망자 비율이 가장 높은** 업종이 **음식 및 숙박업**으로 이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배달음식업의 이륜자동차 사고**임

* 서비스업 업종별 5년간 업무상 사고사망자(2008~2012년)

항목	**음식 및 숙박업**	도소매 및 소비자 용품수리업	건물 등의 종합관리 사업	위생 및 유사 서비스업	사업 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기타
사망자(명)	**186**	155	131	126	81	10	150
비중(%)	**22.7**	18.47	15.61	15.02	9.65	1.19	17.88

- 이에 따라,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여 배달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재해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규칙」**에서 **승차용 안전모 지급 등의 규정을 마련함('17.3월)**

* 승차용안전모 지급, 안전보조장치 및 브레이크 등의 안전장치 불량 시 근로자 탑승제한 등(산업안전보건규칙 제32조제1항제10호, 제86조제11항)

○ 그러나, 똑같이 **이륜자동차를 이용하는 배달종사자임**에도 근로자나 주로 한 사업주에게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아닌 경우에는 **법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됨**

* **최근 법원에서 배달대행 앱을 사용하여 오토바이로 음식 배달**을 하던 고등학생이 교통사고를 당해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한 사안에서 배달원의 **근로자성을 부인함**(서울고등법원 2016. 8. 12. 선고 2015누61216

○ 고용계약 방식에 관계없이 **이륜자동차 배달종사자의 사고가 적지 않고, 배달앱 등을 통한 노무제공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 이륜자동차 사고로 인한 산업재해 보호 대상을 **근로자로만 한정**하는 것은 **이륜자동차를 사용하는 배달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임

2. 신설내용

○ 이동통신단말장치 **등**으로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중개하는 **사업주는** 그 중개를 통해 **이륜자동차로 물건의 수거·배달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안전·보건 조치*를 하도록 그 근거규정을 마련함

* 「안전보건규칙」에 과속 배달(배달시간 제한) 금지, 앱에 이용자(기사용) 등록 시 승용차 면허 및 안전모 소지 여부 등을 확인 후 등록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의무 규정 마련

○ 한편, 중개하는 자가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3.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법 률
< 신 설 >	제78조(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로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는 그 중개를 통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로 물건을 수거·배달 등을 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담당부서	산재예방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대원	연락처	044-202-7697

법의 적용범위 명확화

4. 법의 적용범위(제3조)

1. 개정배경

□ **현행규정**

○ 법 제3조 제1항은 적용범위를 “이 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규모 및 사업의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법의 전부 또는 일부 규정**이 **적용제외** 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 **“사업 또는 사업장”**을 **“사업”**으로 **약칭함**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에 **적용**함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 **문제점**

○ 각 조문에서 사용되는 **“사업”**이라는 용어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약칭**과 **본래적 의미의 “사업”**으로 **혼용되어 사용**

* **“사업”**: “어떤 일을 일정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짜임새 있게 지속적으로 경영함”으로 경영이나 비즈니스, 즉 「상법」상의 상행위와 유사한 개념

* **“사업장”**: “어떤 사업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일정한 장소”로 정의되는데,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루어지는 곳

- 법 적용을 둘러싸고 상당한 혼란을 초래하고 있고, “사업”과 “사업장”의 개념은 구분되는 것이 마땅하므로, **용어 정리 필요**

○ 현행 조문 배열 구조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에는 **적용제외 되는 규정**이 **없는 것**으로,

-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우려**

2. 개정내용

○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장은 당연히 따라오는 종속변수**이므로 적용 범위의 원칙을 **"사업"단위**로 **통일함**

- 즉, "모든 사업"에 적용하되,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 예외**를 **둘 필요**가 있는 경우를 **위해 적용제외 고려요소로 "사업장"을 포함**

- "사업장" 기준으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각각의 해당조문에서 "사업장"을 명시**함

○ "사업 또는 사업장"을 **"사업"**으로 **약칭**하는 규정 **삭제**

- 각 조문별 "사업"이라는 용어가 **"사업"만을 의미하는지 "사업장"이 포함된 용어인지를 검토하여 명확히 구분함**

○ **"사업의 규모"**를 →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및 건설공사의 금액**으로 그 의미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표현함

○ 한편,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도 일반 사업과 동일하게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므로 **별도 규정을 삭제함**

* 근로기준법 등 다른 노동관계법령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의 적용여부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용보험법 제8조(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산업별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법 률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규모 및 사업의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공사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에 적용한다.	< 삭 제>

담당부서	산재예방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대원	연락처	044-202-7697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도급 제한

5. 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제58조)

1. 개정배경

□ 현행규정

○ 현행법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고**는 **그 작업만을** 분리하여 **도급을 줄 수 없도록 '도급 금지'** 규정을 두고 있으나,

-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도급**할 수 있으므로 사실상 **도급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음**

  * 현재('18.11월 기준) 도금, 중금속 및 허가물질 제조·사용작업 인가 사업장: 도급인 기준 19개소, 수급인 기준 25개소

□ 문제점

○ 도금작업, 수은·납 ·카드뮴 등 중금속을 제련·주입·가공·가열하는 작업 등 **현행 도급인가 대상작업**은 유해·위험성*이 매우 높고 단시간에 직업병**을 발견하기 어려워 **지속적인 관찰과 안전 및 보건 관리가 필요**함에도

- 사내 도급을 허용할 경우 수급인의 잦은 변경 등으로 인하여 **해당 작업을 수행한 근로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 관리가 지속되기 어려움**

  * 직업성 암 등 중증질환 이외에도 중추마비, 신경장해, 급성중독 등 노동자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침(특히, 도금·중금속 작업시에는 해당 금속류 외 다양한 고독성물질이 발생되고, 허가물질은 금지물질과 동일한 유해성을 보유)

** 화학물질 잠복기(10~20년)에 따라 직업병 발생 가능성이 상시 존재

○ 따라서,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근로자에게 **중대한 직업병 발생** 등 **건강장해를 초래할 수 있는 작업의 도급을 금지**할 필요

○ 아울러, 현행 제1항의 '**작업만을 분리하여**'라는 문구는 **많은 도급작업 중 일부가 유해작업**일 경우에는 **도급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잘못 해석**될 우려가 있고

- 도급금지 대상의 '수은, 납, 카드뮴 등 중금속'이란 문구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며, 철, 알루미늄 등 **유해성이 낮은 중금속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음

> **<참고>** 중금속이란 비중이 4(물=1) 이상의 무거운 금속원소를 통칭
> ○ 산안법에서는 수은, 납, 카드뮴 이외에도 베릴륨, 비소, 황화니켈, 크롬광, 철, 알루미늄, 구리, 망간 등의 중금속을 관리대상으로 분류
> ○ 그러나, 베릴륨, 비소, 황화니켈, 크롬광 등은 허가물질로 이미 분류되어 있고 철, 알루미늄 등 그 외 중금속은 발암성 등 중대한 건강장해를 유발하는 물질에는 대부분 해당하지 않아 그간 인가대상을 수은, 납, 카드뮴으로 운영*해 왔음
> * 현재까지 수은, 납, 카드뮴 외 중금속으로 도급을 인가받은 사업장은 없음

2. 개정내용

○ 유해·위험성이 매우 높아 **현재 인가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도금**작업 **▲수은·납·카드뮴***의 **제련·주입·가공·가열** 작업 **▲허가물질 제조·사용 작업에** 대하여 **사내 도급을 금지**함

* '수은, 납, 카드뮴 등 중금속' → '수은, 납, 카드뮴'으로 명확히 함

○ **허가물질***의 경우 **유해성·위험성이 매우 높아** 제조·수입 등의 금지가 필요하지만

* 디클로로벤지딘, 베릴륨, 비소, 염화비닐 등 12개 화학물질

- **대체물질 등의 미개발**로 이를 금지할 경우 산업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허가받아 사용토록 한 물질이므로 **도금작업** 등과 동일하게 **도급을 금지**할 필요

○ 다만, 상시 인력의 고용이 어려운 **일시·간헐적 작업과** 도급인의 사업운영에 필수 불가결한 경우로서 수급인이 보유한 **전문적 기술 활용 목적의 도급**은 예외로 허용 하되,

- **기술활용 목적의 도급**인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 승인기간은 3년으로 하며, 연장 및 변경 시에도 승인 받도록 함

○ 또한 현행 제28조 본문의 **'작업만을 분리하여'**를 삭제하여 **일부 유해작업의 도급**도 **도급금지 대상임을 명확히 함**

○ 한편, 사업주가 이를 위반하여 도급한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함

3.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법 률
제28조(유해작업 도급 금지) ① 안전·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그 작업만을 분리하여 도급(하도급을 포함한다)을 줄 수 없다.	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도급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그 작업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시행령) 제26조(도급 금지 및 도급사업의 안전·보건 조치) ① 법 제2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란 같은 사업장 내에서 공정의 일부분을 도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	1. 도금작업 2. 수은, 납 또는 카드뮴의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 3. 제118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

업을 말한다. 1. 도금작업 2. 수은, 납, 카드뮴 등 중금속을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 3.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 4. 그 밖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이하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작업	② 사업주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작업을 도급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그 작업을 하도록 할 수 있다. 1. 일시·간헐적으로 하는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 2. 수급인이 보유한 기술이 전문적이고 사업주(수급인에게 도급을 한 도급인으로서의 사업주를 말한다)의 사업 운영에 필수 불가결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

	우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할 경우 제49조에 준하는 안전·보건평가를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2항제2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④ 제2항제2호에 따른 승인의 유효기간은 3년의 범위에서 정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 사업주가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면 승인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는 제3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⑥ 사업주는 제2항제2호 또는 제5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항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자가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제2호,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승인, 연장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가 제8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승인, 연장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도급 줄 때 지켜야 할 안전·보건조치의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⑧ 제2항제2호,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승인, 연장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기준·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담당부서	화학사고예방과	담당자	사무관 한덕수	연락처	044-202-7755

참고1 도급제도 관련 그간의 검토 경과

1 **연구과제 추진**

○ **도급인가** 및 **하도급 제한**을 위해 **유해·위험작업 도출** 및 현장 **실태조사** 등 실시('16년, 공단)

2 **국회 3당 합의**

○ **「3차 민생경제 협안점검회의」**('16.7.18)에서 '유해·위험업무 **재하도급 제한**' 관련 법률을 **3당 공동입법 추진**키로 합의(실제 입법은 미추진)

3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 발표**('17.8월)

○ **유해·위험**이 특히 높은 작업은 **도급을 금지**, **도급인가** 대상도 **확대**하고 해당 작업은 **하도급**을 금지

* 그 외 도급시 '**적격 하청업체 선정**' 등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대책 포함

4 **사업장 방문조사 실시**

○ 현행 인가대상 **사업장을 방문**(9.22 / 9,28), **작업실태** 조사 및 도급금지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에 대한 **의견수렴**

5 **학계 전문가회의**

○ **현행 인가대상**의 금지·확대를 중심으로 **논의**하고 입법의 실효성 검토

- (1차, '17.9.18) 현행 **인가대상** 작업은 **도급금지**, 인가**대상은 확대**하되 **하도급을 금지**
- (2차, '17.11.17) 현행 **인가대상**을 **확대**하되 **하도급을 금지**, **인가대상** 작업의 도급금지는 **부정적**

6 **노사단체 의견수렴**('17.12.8)

○ 현행 **인가대상** 작업 **도급금지**, 인가대상 확대 및 하도급 금지에 대한 의견수렴

❖ **도급제도 관련 정부입법 현황**('16.6.28, 국회 계류)

▲ **(인가 유효기간 설정)** 인가의 **유효기간을 3년** 이내로 정하고, 중요 인가사항 변경시에는 **변경인가**(제28조)

▲ **(도급인의 책임강화)** 도급인은 수급인의 노동자가 작업하는 **모든 작업장소**(22개 장소 → 모든 장소)에 대해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이행(제29조)

▲ **(도급인의 벌칙강화)** 도급인에 대한 **처벌**수준을 **수급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법정형 상향(1년·1천만원 이하 → 5년·5천만원 이하, 노동자 사망시 7년·1억원 이하)

※ **(기타) 안전보건정보 제공**이 필요한 도급작업에 **질식·붕괴 우려작업**을 포함('17.4.18 시행), 도급인가 시 안전보건진단에 준하는 **안전보건평가** 실시('16.2.4 시행)

참고2 도급인가 대상 작업과 건강장해

1. 도금작업

<table>
<tr><th colspan="2">항 목</th><th colspan="2">내 용</th></tr>
<tr><td colspan="2">도금작업이란?</td><td colspan="2">금속 또는 비철금속의 표면에 다른 금속의 얇은 막을 입히는 작업</td></tr>
<tr><td rowspan="6">도금의 종류</td><td rowspan="4">전기도금</td><td>크 롬 도 금</td><td>경질크롬도금: 공업용, 내마모성- 도금층 두꺼움
장식크롬도금 : 광택이 뛰어남 - 도금층 얇음</td></tr>
<tr><td>동 도 금
니 켈 도 금</td><td>장식크롬도금 등의 준비 - 방청성이 큼</td></tr>
<tr><td>아 연 도 금
카드뮴 도금</td><td>크로메이트처리* 후 - 광택성, 내부식성
* 금속 소재 표면을 크롬산염으로 처리하는 것</td></tr>
<tr><td>금, 은 도금</td><td>장식성이 큼</td></tr>
<tr><td rowspan="2">기타도금</td><td>진 공 증 착 법</td><td>알루미늄 등을 진공상태에서 증착*
*금속을 고온으로 가열하여 증발시켜 그 금속 증기로 막을 입히는 것</td></tr>
<tr><td>용 해 도 금</td><td>아연도금(함석판), 주석도금(양철판)</td></tr>
<tr><td rowspan="3">작업공정</td><td>1) 전처리</td><td colspan="2">탈지(기름기 제거) → 수세(물로 씻음) → 산세척(염산, 황산 수용액 등에 담가서 씻음) → 중화(산과 염기로서의 성질 제거) → 수세</td></tr>
<tr><td>2) 도 금</td><td colspan="2">도금조(도금 용기)에 담금 → 통전(전류를 통하여 도금) → 꺼냄 → 수세 → 건조</td></tr>
<tr><td>3) 마무리</td><td colspan="2">버핑연마(천 또는 가죽에 연마재를 바르고 금속 표면을 연마하는 작업)</td></tr>
<tr><td colspan="2" rowspan="4">도금 작업 시 취급물질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td><td>(탈지작업시 취급물질)
트리클로로에틸렌 1,1,1 - 트리클로로에탄</td><td>중추신경계장해, 간장해, 신경장해</td></tr>
<tr><td>(산세척시 취급물질)
염산, 초산, 황산,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륨</td><td>눈, 피부 및 점막에 자극, 염증, 치아는 부식유발</td></tr>
<tr><td>(금, 은 도금시 취급물질)
시안화나트륨,
시안화칼륨</td><td>뇌중추마비, 질식</td></tr>
<tr><td>(산세척시 취급물질)
크 롬 산</td><td>피부장해, 크롬궤양, 비중격*천공
* 비강을 좌우로 나누어주는 칸막이 벽</td></tr>
</table>

2. 수은, 납, 카드뮴 중금속을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작업

○ **(공정)** 주로 광석에서 원하는 **금속을 추출**하거나 **금속의 성질**을 **개선**하기 위한 작업공정

작업 공정	내 용
제 련	채굴된 암석(광석)에서 목적하는 금속을 추출하여 괴 또는 가루로 만드는 공정
주 입	제련시 추출한 금속물질(괴 또는 가루)을 로(爐)에서 녹여 주형(틀) 등에 금속을 부어 넣는 공정
가 공	금속재료를 절단하거나 구멍 뚫기 등을 거친 후, 용접 및 리벳 등을 이용하여 접합하는 공정
가 열	금속 또는 합금에 요구되는 성질 즉 강도, 경도(변형률), 내마모성, 내충격성 및 가공성 등의 성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열을 가하는 공정

※ 포스코, LS니꼬동제련 등 대규모 시설(대형 가열로 등)을 보유한 사업장의 주요 공정으로 구성

○ **(건강장해) 수은, 납, 카드뮴**은 **중금속**으로서 노출시 **급성독성, 발암성, 생식세포 변이원성*** 및 **생식독성**** 등 인체에 **치명적인 건강장해** 유발

* **생식세포 변이원성**: 자손에게 **유전될 수 있는 사람의 생식세포**에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

** **생식독성**: **생식기능**, **생식능력** 또는 **태아의 발생·발육에 유해한 영향**을 주는 물질

3. 허가물질(법 제38조제1항)*을 제조·사용하는 작업

* ①디클로로벤지딘과 그 염 ②알파-나프틸아민과 그 염 ③크롬산 아연, ④오로토-톨리딘과 그 염 ⑤디아니시딘과 그 염, ⑥베릴륨, ⑦비소 및 그 무기화합물 ⑧크롬광(열을 가하여 소성처리하는 경우에 한함), ⑨휘발성 콜타르피치, ⑩황화니켈, ⑪염화비닐, ⑫벤조트리클로리드

○ **(공정)** 화학공장에서 원유 등을 이용하여 반응, 추출, 증류 등 다양한 화학공정을 거쳐 해당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 합성섬유, 전기제품, 반도체 소자 제조 등의 분야에서 중간재료* 또는 주제품의 성능 등의 향상을 위해 허가물질을 부재료로 사용

※ (예) 염화비닐은 법용 플라스틱(PVC)를 생산하기 위한 원료로 사용

○ **(건강장해)** 대부분의 물질이 **발암성, 생식세포 변이원성** 및 **생식독성** 등 인체에 **치명적인 건강장해** 유발

6. 도급의 승인 (제59조)

1. 개정배경

□ 현행규정

○ 도급 사업 시 사업주의 산업안전과 관련한 의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유해작업의 분리 도급을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인가**하는 제도를 마련함

□ 문제점

○ 유해·위험 물질* 취급으로 인한 **중독사고** 등 화학물질로 인한 **산업재해가 다수 발생**('14년, 공단)

* 황산(111건), 불산(70건), 질산(50건), 염산(46건)이 다수를 차지함('09~'14.4월)

** ▲**황산**(발암성, 급성독성, 피부부식성 등) ▲**불산**(급성독성, 피부부식성 등) ▲**질산**(급성독성, 피부부식성 등) ▲**염산**(급성독성, 피부부식성 등)

- 특히, **장시간** 유해·위험 물질 취급 설비의 **유지·보수** 등 작업이 **질식, 중독사고**를 유발함

* **사업장수 추정:** 4,876개소('14년 작업환경실태조사) x 37.12%(제조업 도급비율, 사업체패널조사(한국노동연구원('13)) = 1,810개소 이하

- 즉, 화학물질 자체의 독성 외에도 **장시간 화학물질에 노출**되는 **특정 작업방식이 직업병을 유발**하는 중요 요인으로 작용

- 따라서, 위의 **유해·위험물질 취급 작업의** 경우에는 **도급인**이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 및 보건조치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승인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음

○ 현행법은 **도급 시 지켜야 할 안전 및 보건조치**를 열거*하고,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한 후에만 **인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 공단이 안전·보건조치의 **기술적 사항**만 **확인**토록 하고 있어 수급인 노동자의 **안전보건**이 **실질적으로 확보**된다고 보기 **어려움**

* **현행 「안전보건규칙」**에 열거된 안전보건기준은 **당연히 준수**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인가의 **승인기준**을 특별히 정한 것이 아님

○ 한편, **'인가'란** 행정청이 사인간의 **법률행위를 보충**하여 그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것이나,

- 동 규정에서 고용부장관의 인가는 **도급계약의 효력 발생 여부와는 관계가 없음**

- 따라서, '인가'를 **일정한 사실을 인정하**는 **행정처분인 '승인'**으로 변경함이 타당함

2. 개정내용

○ 도급승인은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중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 등이 있는 물질의 취급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작업을 대상으로 정하도록 함

* 황산, 불산, 질산 또는 염산 등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 등이 있는 물질을 취급하는 설비를 개조·분해·해체·철거하는 작업 또는 해당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을 하위법령에 규정하는 방안 검토 중

○ 고용부장관은 도급인이 승인기준(**안전 및 보건조치)의 완료 여부** 뿐만 아니라 승인 이후의 **지속적인 이행체계*까지 확인** 한 후 승인하도록 함

* 법 **제29조제2항, 제4항 및 제5항**: 협의체 구성, 도급인의 순회점검, 교육, 합동점검체계, 안전보건 정보제공 등

○ 한편, 사업주가 이를 위반하여 도급한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함

3.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법 률
제28조(도급금지) ① 안전·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그 작업만을 분리하여 도급(하도급을 포함한다)을 줄	제59조(도급의 승인) ① 사업주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중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 등이 있는 물질의 취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을 도급하려

수 없다.	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도급 줄 때 지켜야 할 안전·보건조치의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에 관하여는 제58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할 경우 제49조에 준하는 안전·보건평가를 하여야 한다.	<삭 제>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자가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삭 제>

담당부서	화학사고예방과	담당자	사무관 한덕수	연락처	044-202-7755

7. 도급의 승인 시 하도급 금지(제60조)

1. 신설배경

○ 도급받은 작업을 하도급하는 경우 **다단계 하도급** 등으로 인해 도급인의 위험관리 및 도급인과 수급인간 의사소통이 어려워 **사고발생의 위험이 높아지므로 '하도급 금지*'의 도입이 필요**

- 아울러, 도급승인 대상 작업은 **수급인이 작업함을 전제로 도급인이 안전 및 보건조치 등을 완료한 것**이므로 수급인이 이를 **다시 도급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타당*

* 도급받은 작업을 하도급하는 경우 도급인이 하도급받은 자에 대해 정상적 안전보건관리가 불가능

2. 신설내용

○ 도급 승인 대상작업으로서 고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도급한** 작업에 대해서는 **하도급을 금지**

3.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법 률
< 신 설>	제60조(도급의 승인 시 하도급 금지) 제5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승인, 같은 조 제5항 또는 제6항(제5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연장승인 또는 변경승인 및 제59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작업을 도급받은 수급인은 그 작업을 하도급할 수 없다.

담당부서	화학사고예방과	담당자	사무관 한덕수	연락처	044-202-7755

8. 적격수급인 선정 의무(제61조)

1. 신설배경

○ 최근 산업 전반에서 도급은 **비용절감, 위험 외주화** 등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임

- 특히, 사업주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문인력 등의 확보가 어려운 **영세업체에 낮은 금액으로 도급**을 할 **유인**이 있음

- 이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갖추지 못한 영세업체**가 도급을 받아 그 **소속 노동자가 산업재해를 입는 문제가 발생**

2. 신설내용

○ 사업주로 하여금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한 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도록 함

3. 입법례

□ 우리나라

【화학물질관리법 】

제31조(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 등)③ 도급인은 **환경부령으로 정한 능력과 기준을 갖춘 자에게만**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도급하여야 한다.

□ 독일

【 위험물질령 】

제15조(도급제한) ①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은 **그 작업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기업**에만 위탁되어야 한다.

4.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법 률
< 신 설 >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담당부서	산업안전과	담당자	사무관 피해근	연락처	044-202-7723

산업재해 예방 책임 주체 확대

9.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수립(제14조)

1. 신설배경

○ 법인의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인의 대표자, 현장소장, 공장장** 또는 **중간관리자인 관리감독자** 중 **누구를 행위자**로 처벌할 것인지 여부는

- **▲회사 규모 ▲구체적인 업무분장 ▲안전관리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 위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그러나,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 산업재해 예방을 총괄하도록 하므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현장소장** 등이 행위자로서 **처벌**받게 되고 **대표자**는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임

○ 특히, '16년 **사고 사망재해**를 5건 이상* 유발한 **◉◉건설, ◈◈산업 2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특별감독** 실시하였는데

* '16년 한 해 동안 ◉◉건설, ◈◈산업은 추락방지조치 등 가장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국내 건설사 중에서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건설은 8건·8명 사망, ◈◈산업은 7건·8명 사망)

- **32개 현장**의 재해예방 조치와 본사의 안전보건관리시스템 전반을 점검하여 **총 145건의 사법처리**, 기업에 5억여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대표이사에 대한 형사적 제재조치는 불가능한 상황**

○ **기업의 규모가 크고 다수의 사업장**일수록, 대표자의 업무가 **추상적·포괄적일수록, 안전관리책임자가 중층적**이고, **안전관리 업무**가 **현장소장**에 **집중**될수록 **대표자의 면책 가능성**이 높아짐

○ 이에 따라, **기업은 대표자가 형사책임에서 회피될 수 있도록 공식적인** 안전관리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으로 **안전에 관한 지휘체계**를 설계하게 되고 이는 결과적으로 기업의 **산업재해 예방에 부정적 영향**을 끼침

* 일반적으로 **법인의 대표이사가 사업장에 상주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자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되고, 대표이사가 사업장에 상주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대표이사가 공장장 등에게 경영의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위임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자**(부사장, 공장장, 지점장, 사업소장, 현장소장 등)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책임을 부담함**

- 따라서, 회사 차원에서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비용 절감을 통한 이윤추구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리 법인의 경우 법인 차원에서 산업재해 예방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할 필요

- 특히, **건설업 등 사업장이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도 **법인의 대표이사** 등 최고경영진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도록 할 필요**

2. 신설내용

○ **기업의 안전 및 보건 중심의 경영시스템**은 해당 기업의 대표이사 등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인식과 그에 바탕을 둔 **안전보건경영정책에 크게 의존함**

- 특히,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며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이사로서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며

  * **상법 제169조(회사의 의의)** 이 법에서 "회사"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제170조(회사의 종류) 회사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5종으로 한다.

  * **상법 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따라서, 회사의 **대표이사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직접적인 의무를 부담하도록 할 필요**

- 다만, **대표이사**가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의무**를 부담하는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제외**할 필요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회사**에 대해서 **우선 적용**함

○ **대표이사**가 **매년** 회사 전체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얻도록 함

- 아울러, **대표이사 등에게** 이사회에서 승인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 계획 수립 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비용, 시설, 인원** 등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

○ 한편, “안전과 보건에 관한 계획”을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거나 승인을 얻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함

3.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법 률
< 신 설>	제14조(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 ① 「상법」 제170조에 따른 주식회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표이사는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비용, 시설, 인원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담당부서	산재예방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대원	연락처	044-202-7697

10.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를 부담하는 도급인 확대(제63조)

1. 개정배경

□ 현행규정

○ 현행 법 제29조제1항과 제3항은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부담하는 도급인의 범위를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 도급 또는 전문 분야 공사 전부 도급'**으로 한정

- 수급인과 같은 책임을 부담하는 **제3항의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 책임'**은 추락, 토사 붕괴 등 **22개 위험발생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만 부담

- 도급에 따른 **도급인 고유의 책임**인 **제2항의**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등의 책임은 도급인과 수급인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만 부담함**

□ 문제점

○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 도급인지**, 도급인 근로자와 수급인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했는지**, 22개 **위험발생 장소인지 등에 대해** 사안마다 법 적용을 놓고 **논란이 발생**하고,

- 또한, 수급인 근로자에게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으나 **'일부 도급'이 아니라서**, 또는 **'22개 위험장소'가 아니라서** 도급인에게 **책임을 묻지 못하는 결과 초래**

- 특히, 산업재해가 발생한 후 사후적으로 위험 장소를 추가하는 **입법대응 방식에 대한 비판도 있음**

○ 한편, 현행법 법 제29조제1항의 **'사업'**의 해석을 **'본래 사업과 그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해 반드시 수반되는 업무'로 한정해석**하여 도급인의 책임 범위를 축소하고 있지만

- 일반 사업에서 **생산설비의 유지, 개·보수 작업, 청소·경비** 등 **모든 업무**는 **직·간접적으로 사업에 수반되는 업무**이며 도급인의 책임을 달리 적용할 **합리적 이유가 없음**

<사례>

C회사 (발주자) → 도급 (시스템 경비 발주) A회사 (수급인) → 하도급 (CCTV설치 도급) B회사 (하수급인)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인으로서 책임을 부담하는 자는 A회사이며 C회사는 시스템 경비 업무를 도급했지만 발주자로서 도급인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음(인천지방법원 2016. 5. 4. 선고 2015노4112 판결<확정>)

○ 따라서, '도급인의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책임'은 **도급인이 수급인 또는 수급인 근로자의 작업 장소, 시설** 등의 **위험에 대하여 지배·관리권이 있다면**

- **도급의 유형, 위험장소 여부 등에 관계없이**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보건조치에 대해 책임**지도록 함이 타당함

○ 아울러, 도급인이 안전 및 보건조치의 하나로 **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하여 지시**를 하는 경우 **불법파견의 소지** 등이 있어 수급인 근로자에 대하여 직접 지시하는 조치는 제외됨을 명확히 함

2. 개정내용

○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 의무를 확대하는 전제로 **도급 및 도급인과 발주자의 개념을 명확히 함**

- **"도급"**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함

- **"도급인"이란**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함. 다만, "건설공사발주자는 제외함"

○ **"수급인"**이란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함

- **"관계수급인"**이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함

○ **도급인**이 수급인 또는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조치 책임을 부담하는 범위**를

-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장소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22개 위험장소 예정)**에서 작업하는 경우로 규정**하여

-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 장소, 시설 등의 위험에 대하여 지배·관리권이 있다면**

- **도급의 유형, 위험장소, 사업의 목적 여부** 등에 관계없이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조치에 대해 책임**지도록 함

* 개정법률에 따르면 위 사례에서 c회사가 도급인으로서 책임을 부담함

○ 또한, **구체적인 조치의무**는 현행 입법 방식과 같이 하위법령인 **「안전보건규칙」을 따르도록 함**

○ 다만, **불법파견 등의 분쟁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

○ 한편, 이를 위반한 도급인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도급인에게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동일한 죄를 범한 경우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3.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법 률
<신 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도급”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신 설>	7. “도급인”이란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발주자는 제외한다.
<신 설>	8. “수급인”이란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신 설>	9. “관계수급인”이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한다.
제9조의2(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이하 "산업재해 발생건수등"이라 한다)을 공표하여야 한다.	근로자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이하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이라 한다)을 공표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도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수급인[하수급인(下受給人)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도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등에 수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등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도급인의 사업장(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에 도급인의 산업재해발생건수등에 관계수급인의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건수등을 공표하기 위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을 공표하기 위하여 도급인에게 관계수급인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표의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하는 사업 2.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하는 사업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 1. ~ 2. (삭 제)

담당부서	산업안전과	담당자	사무관 피해근	연락처	044-202-7723

11. 안전보건총괄책임자(제62조)

1.개정배경

□ 현행규정

○ **도급인에게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여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도록 함

○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도급인의 범위**를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부담하는 범위와 동일**하게 규정함

□ 문제점

○ **도급인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 **도급인의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책임의 범위가 확대**될 경우 **이와 동일하게 규정할 필요**

2. 개정내용

○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도급인의 범위를 확대**함

○ 한편, 이를 위반한 도급인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3.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법 률
제18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 사업의 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	제62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

여 자신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를 두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에서는 그 사업장에서 사업을 총괄관리하는 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장에서는 그 사업장에서 사업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을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2.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1. ~ 2. (삭 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권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권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담당부서	산업안전과	담당자	사무관 피해근	연락처	044-202-7723

12.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제64조)

1. 개정배경

□ 현행규정

○ 현행 **법 제29조제2항, 제4항은** 수급인과 동일한 안전·보건 조치 외에 **도급에 따른 도급인의 독자적인 의무***를 규정함

* 협의체 구성·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안전보건교육 지도·지원 등

□ 문제점

○ 도급인의 **독자적인 의무가 여러 규정에 산재**되어 있어 **이를 정비**할 필요

2. 개정내용

○ 수급인과 공동책임을 부담하는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와 구분하여 **도급에 따른 도급인 고유의 책임을 별도로 규정함**

-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작업장 점검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화재·폭발, 지진** 등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휴게시설,** 그 밖에 **시설 설치 등을 위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시설 이용에 관한 협조

○ 한편, 도급인의 조치의무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3.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법 률
제29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 조치) ①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2. 사업이 전문분야의 공사로 이루어져 시행되는 경우 각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1. ~ 2. (삭 제)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는 다음 각 호의 조치로 한다.	(제2항 본문 삭제)
1.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1.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2. 작업장 순회점검
3.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3.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4. 제42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4.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제29조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의 운영과 수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경보운영 사항의 통보 가.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나. 작업 장소에서 화재가 발생하거나 토석 붕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가.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나. 작업 장소에서 화재·폭발, 토사·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
제29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 조치) ⑨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위생시설에 관한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수급인에게 위생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거나 자신의 위생시설을 수급인의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절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6.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 그의 수급인 및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에 대한 안전·보건점검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도급인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을 하여야 한다.

⑩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운영, 작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안전보건교육 지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담당부서	산업안전과	담당자	사무관 피해근	연락처	044-202-7723

13.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제65조)

1. 개정배경

□ 현행규정

○ **화학물질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내·외 도급에 관계없이 수급인에게 유해·위험 작업**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를** 규정

○ **'17년 개정 시** 정보 제공 대상 작업에 **질식 또는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작업이 **추가**됨

□ 문제점

○ 도급인은 **수급인의 근로자가 도급인이 제공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받고 **작업을 수행**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 이러한 규정이 **법의 위임 없이 시행규칙 제30조의4에 규정**

○ 아울러, 도급인의 **정보제공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 미흡하여, **이에 대한 보완 필요**

2. 개정내용

○ **(정보제공 방법 및 시기)** 현행 시행규칙에 규정된 '해당작업 시작 전', **'문서'**로 제공하여야 할 의무를 **법률에 상향 입법**함

○ **(확인의 의무)** 수급인의 근로자가 제공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받고 작업을 수행하는지 **도급인의 확인의 의무 규정**

○ **(수급인의 정보제공 요청)**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정보 미제공 시 도급 작업 개시 연기 및 계약의 지체 책임 면제**를 명시함

○ **(위반시 제재조치)** 정보제공 의무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함

3.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법 률
제29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 조치)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도급하는 자는 그 작업을 수행하는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 시작 전에 수급인에게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급하는 자가 해당 정보를 미리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수급인이 정보 제공을 직접 요청할 수 있다.	제65조(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 ① 다음 각 호의 작업을 도급하는 자는 그 작업을 수행하는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 시작 전에 수급인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후단을 제2항으로 이동)
1.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製劑)를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개조·분해·해체 또는 철거하는 작업	1. 폭발성·발화성·인화성·독성 등의 유해성·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 또는 그 화학물질을 함유한 혼합물을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반응기·증류탑·배관 또는 저장탱크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개조·분해·해체 또는 철거하는 작업
2. ~3. (생 략)	2. ~3.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항 후단을 제2항으로 이동)	② 도급인이 제1항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해당 작업 시작 전까지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인이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시행규칙 제30조의4에서 이동)	③ 도급인은 수급인이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수급인은 제2항에 따른 요청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이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급 작업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계약의 이행 지체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담당부서	산업안전과	담당자	사무관 피해근	연락처	044-202-7723

14.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제66조)

1. 개정배경

□ 현행규정

○ 수급인 근로자가 법령을 위반한 경우 **도급인에게 시정하도록 조치**할 **의무**를 부과하고, **수급인과 수급인 근로자는 이를 따르도록 규정**

□ 문제점

○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에게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하는 등 지시를 하는 경우 **불법파견 소지가 있음**

○ 또한,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를 직접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수급인에게 시정하도록 조치하지 않음을 이유로 **처벌함**은 **이중제재일 수 있음**

2. 개정내용

○ **사내 도급시**의 시정조치와 **폭발·질식 등 위험이 있는 작업**의 **사내·외 도급시**의 시정조치를 구분하여 규정함

○ 도급인의 시정조치 명령 대상을 **관계수급인으로 명확히 하되, 관계수급인 근로자를 그 대상에서 제외함**

○ **도급인**이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수급인 근로자가 작업하는 경우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직접 부담**하므로

- **시정조치 의무**는 **삭제**하되, 수급인에게 시정조치 **명령권한으로** 그 규정을 변경함

○ 도급인의 시정조치를 수급인 또는 수급인 근로자가 따르지 않은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3.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법 률
제29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 조치) ⑥ 제1항에 따른 사업주 또는 제5항에 따라 도급하는 자는 수급인 또는 수급인의 근로자가 해당 작업과 관련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후단 신설> (제7항에서 후단으로 이동 배치) ⑦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66조(도급인의 관계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 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받은 작업과 관련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면 관계수급인에게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② 도급인은 제65조제1항 각 호의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에 수급인 또는 수급인 근로자가 도급받은 작업과 관련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면 수급인에게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담당부서	산업안전과	담당자	사무관 피해근	연락처	044-202-7723

참고1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도급인의 책임 규정 구조

조항	의무내용		제재내용
제29조 제8항	도급인의 의무	공기단축, 공법 변경제한	1천만원 이하 벌금 (제69조 제1호)
제9항		위생시설(장소) 제공	500만원 이하 과태료 (제72조 제4항 제3호)
제29조 제5항	유해·위험작업의 도급인 의무	정보제공의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68조, 제2호)
제6항		수급인등의 시정조치의무	500만원 이하 과태료 (제72조 제4항 제3호)
제29조 제1항	일부 도급·전문분야 도급인 의무	산재예방조치	500만원 이하 벌금 (제70조)
제3항		산재예방조치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68조, 제2호)
제4항		공동 안전보안점검	500만원 이하 벌금 (제70조)
제6항		수급인등의 시정조치의무	500만원 이하 과태료 (제72조 제4항 제3호)
제29조 제2항		제1항 이외의 산재예방조치	없음
제10항		위임규정	없음
제29조 제7항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의 이행의무		500만원 이하 과태료 (제72조 제4항 제3호)

15. 가맹본부의 산업재해 예방조치(제79조)

1. 신설배경

○ 최근 프랜차이즈 가맹점 및 종사자가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상당수가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기 때문에, 산업재해 예방이 어려워 **그 근로자가 재해에 쉽게 노출됨**

【통계청 서비스부문 프랜차이즈 조사 ('12~'14)】

연도	가맹점 (천개)	종사자 수 (천명)	가맹점당 종사자 수	매출액 (조원)	가맹점당 매출액 (억 원)	영업이익 (조원)	가맹점당 영업이익 (억 원)
2014	167	577	3.46	43.0	2.6	4.5	2730
2013	151	511	3.38	37.6	2.5	4.0	2625
2012	147	486	3.30	35.4	2.4	3.7	2520

【사업장 규모별 재해현황('17.10월)】

규모 / 내용	계	50인 미만 (5인 ↓)		50~99인	100~299인	300~499인	500~999인	1,000인 이상
재해율(%)	0.4	0.87	0.55	0.26	0.18	0.15	0.15	0.14
사고사망 만인율(‰)	0.44	0.85	0.57	0.32	0.28	0.23	0.24	0.1

【대표 업태별 재해현황('16.12월)】

업태	근로자수	재해자수	재해율(%)
비알콜음료점업(커피 등)	72,587	167	0.23
체인화편의점	82,234	55	0.07
치킨전문점	16,051	515	3.21

○ 한편, **가맹점의 서비스 또는 생산방식**은 **가맹본부의 정형화된 매뉴얼**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고,

- 기계나 설비 등 비품과 원자재, 작업도구 대부분을 **가맹본부가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므로, 작업 시 발생하는 **위험**도 **가맹본부에 기인**하는 측면이 강함

- 따라서, 가맹점 사업자 및 가맹점 근로자의 효과적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가맹본부의 역할이 중요**

- 그러나,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가맹본부의 재해예방 의무에 관한 규정 미비**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제도와 가맹사업자 및 그 직원에 대한 교육 등의 의무를 두고 있으나,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는 선에 그치고 있으며, 재해예방 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조(가맹본부의 준수사항)가맹본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4. **가맹점사업자와 그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

○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가맹점 설비·기계·원자재·상품 등을 공급하는 경우

- **가맹점 사업자와 그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직접 일정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부담**할 필요

2. 신설내용

○ **일정 규모 이상**의 **가맹본부는**

- **가맹점사업자 및 가맹점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가맹점의 안전 및 보건 프로그램 마련·시행 ▲가맹본부가 공급·설치하는 설비·기계·상품 등에 대한 안전 및 보건 정보 제공

○ 한편, 이를 위반한 **가맹본부에게는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3. 외국 입법례: [참고2] 참조

4.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법 률
<신 설>	제79조(가맹본부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맹본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맹본부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가맹점사업자

	에게 가맹점의 설비나 기계, 원자재 또는 상품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 가맹점사업자와 그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가맹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프로그램의 마련·시행 2.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설치하거나 공급하는 설비·기계 및 원자재 또는 상품 등에 대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의 제공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프로그램의 내용·시행방법,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의 제공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담당부서	산재예방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대원	연락처	044-202-7697

참고1 가맹점의 주요 재해 사례

업종	주요 재해사례
비알콜 음료점업 (커피 등)	('16.01.11.) 접시를 세척하고 닦던 중 깨진 접시 모퉁이에 손을 베임
	('16.02.09.) 카페에서 빵을 만들기 위해 밀가루 반죽을 반죽기에 넣던 중 좌측 손이 함께 빨려 들어가 손 끼임
	('16.03.24.) 포트에 담겨져 있던 긴 스푼 끝이 소매에 감겨 포트가 넘어지며 뜨거운 물이 팔에 쏟아져 화상을 입음
	('16.04.07.) 높은 선반에 있던 물건을 꺼내려다 밟고 있던 지지대(플라스틱 음료박스)가 무너져 떨어짐
체인화 편의점	('16.03.16.) 편의점 청소를 하기 위해 뜨거운 물을 옮기던 중 물통을 넘어뜨려 오른손에 화상을 입음
	('16.04.30.) 물건이 담긴 플라스틱 박스를 편의점 밖으로 옮기던 중 편의점 입구에 있던 디딤돌에 걸려 넘어짐
	('16.08.12.) 입고된 물건을 진열판매대에 진열하기 위해 커터칼로 박스를 개봉하다 손을 베임
	('16.09.29.) 편의점 창고에서 선반 위를 정리하기 위해 의자를 밟고 작업하다 내려오던 중 의자가 흔들려 중심을 잃고 떨어짐
치킨 전문점	('16.02.26.) 채소절단기(파채전용)의 전원코드를 뽑지 않은 채 청소하다 옆에 있던 물건이 넘어지면서 전원스위치를 건드려 손가락이 끼여 절단됨
	('16.06.22.) 밤 10시경 이륜차로 배달을 하던 중 횡당보도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사람을 피하려다 빗길에 미끄러져 넘어짐
	('16.07.21.) 닭을 튀기던 중 기름이 튀어 화상을 입음
	('16.11.26.) 새벽 1시경 가게 홀에서 주방으로 이동 중 바닥에 있던 물기(살짝 언 상태)를 밟고 미끄러져 넘어짐

참고2 프랜차이즈 노동관계에 대한 입법례

□ 프랜차이즈 정의

(1) 프랑스

○ **경제 및 재정 용어에 대한 행정명령**으로

- "사업자가 다른 독립된 사업자들에게 사용료를 대가로 물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신의 회사명과 상표를 표방할 수 있는 권리를 수여하는 계약"으로 프랜차이즈를 정의함

- 동 계약에는 기술적 조력이 동반 될 수 있음을 첨언함(1973.11월)

○ **유럽사법재판소**는

- "유통업자로서 시장에 진입을 한 사업자와 영업 방식 일체를 조정할 수 있는 사업자가 보수를 조건으로 독립적인 상인에게 사업자의 회사명과 사업자가 성공을 거둔 영업 방식을 다른 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정의함

○ **「직업윤리법전」**에서 "프랜차이즈 제공자로서의 사업자와 프랜차이즈 수혜자로서 유일 또는 다수의 사업자 사이에 체결되는 협업의 방식"으로 정의함(1987년)

- 프랜차이즈 제공자인 사업자는 ① 고객들이 인식할 수 있는 **표지의 소유권자 또는 사용권자** ② 경험이나 노하우의 **사용법을 갖고 있어야** ③ 일련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보유하고 있을 것을 프랜차이즈 계약의 필수 요소로 제시함

(2) 독일

○ 독일은 프랜차이즈에 대한 법률상의 정의는 존재하지 않고, 독일프랜차이즈협회가 경영적 정의를 제안함

○ 독일프랜차이즈협회는 "프랜차이즈"란

- 장기채권채무관계에 기초한 법률상 독립적인 기업이 수직적·협력적으로 조직된 판매 시스템"으로 정의하고

- 이 시스템은 시장에 통일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시스템 파트너의 분업적인 이행프로그램 및 시스템에 적합한 행동 확보를 위한 지시감독 시스템을 특징으로 한다고 판단

(3) 영국

○ **프랜차이즈에 대한 별도의 법적 정의는 없고,**

- 프랜차이즈 관계는 가맹본부가 각종 영업의 지원과 통제를 하는 한편, 가맹점주로부터 비용을 받을 권리 및 영업상 지원의 대가로 일정한 경제적 이익을 지급받는 계약을 통해 성립된다고 함

(4) 일본

○ **「중소소매상업진흥법」**은 프랜차이즈 체인의 의미로 **'특정연쇄사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 "주로 중소소매업자에 대하여 정형적인 약관에 의한 계약에 기초하여 계속적으로 상품을 판매하고 또는 판매를 알선하거나 경영에 관한 지도를 행하는 사업"을 특정연쇄사업이라 하고 이에 프랜차이즈 시스템이 포함된다고 함

□ **프랜차이즈 사업에서의 노동관계에 대한 법적 규율**

(1) 프랑스

○ **영업점의 영업점장(영업점관리인)에** 대한 규정을 두어 영업점장에 대해 사용자에 대한 종속성은 희박하지만, 경제적 의존성이 높음을 고려하여 노동법전의 규정들을 적용하고(프랑스 노동법전 제7편, 제3권)

- **가맹본부가** 영업점에서의 **근로조건과 건강·안전에 관한 조건을 정했거나 그에 동의한 경우** 근로시간과 휴식·휴가, **건강과 안전에 관한 노동법전의 규정 적용에 있어 사업주로서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도록 함**

○ **대법원**은 **프랜차이즈 계약**이 체결된 경우라도

- 그 본질이 영업점장의 범위로 포섭되어 근로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근로계약관계의 성립을 인정하고 노동법전의 적용을 인정함

- 즉, ①가맹본부가 **준수사항**을 가맹점주에게 **강제**한 점 ②가맹점주에게 **자율성 없이 업무대행인에 불과**했던 점 ③ 가맹본부가 계약 해지 등 **제재를** 한 점 등에 근거하여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에 종속적 관계였음을 인정하고 영업점 관리인에 대한 노동법전상의 보호는 **가맹점주에게도 적용**된다고 판단

(2) 독일

○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별도의 법률은 없고,** 일반적으로 약관 규제를 통해 규율되고 있음

- **계약의 실제 이행 모습에 따라** 자영업자 또는 근로자 유사한 자로 판단하여 그 법적 성격에 따라 **노동법 적용여부를 달리 보고 있음**

○ 독일 연방노동법원은 가맹본부의 가맹점주에 대한 지시권의 구속여부, 가맹본부의 상세한 매뉴얼 존재여부, 가맹점 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가맹본부의 일정한 통제권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가맹점주의 근로자성 판단의 기준으로 하고 있음

-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와의 관계에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맹점주에게 고용된 근로자와 가맹본부 사이에 간접적 근로관계가 성립하여 노동법상의 관계를 인정하고 있음

(3) 영국

○ 가맹점주는 자신의 사업을 통해 이윤을 창출하고, 상표 및 영업 기술 등을 대가로 일정한 이익만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노무제공자로 인정되지 않으묘 프랜차이즈 관계에 관한 **특별한 법적 보호 장치는 없음**

○ 다만, 최근 판례 경향은 노무제공자에의 포섭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며, 가맹점주의 경우에도 가맹본부에 사업의 주된 운영을 의존하여 경제적 종속성이 있으므로 계약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태가 노동관계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노동관계에 포섭시키려 하고 있음

(4) 일본

○ 「중소소매상업진흥법」「사적독점의 금지 및 공정거래 확보에 관한 법률」,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민법」 등으로 규율하는바,

- 노동관계에 대한 규정은 없음

○ 지방 노동위원회는 편의점 가맹점주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가맹본부에 단체교섭을 요구한데 대하여

- **가맹본부의 단체교섭 거부**를 **부당노동행위로 구제명령을 내림**으로서 가맹점주의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여 구제명령서를 발부, 프랜차이즈 관계를 **노동관계 관점에서 다루기 위한 계기를 마련함**

참고3 미국의 프랜차이즈 노동관계에 대한 주요 사건 등

(1) 개요

○ 전통적으로 프랜차이즈 관계에 국가가 직접 개입하는 일은 드물었음

○ 최근 오바바 정부에서 중산층과 취약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 하청, 프랜차이즈, 공급체인 등에 대한 노동법적 개입을 통한 감독과 규율을 강화

- 연방노동부와 연방노동위원회는 가맹점주와 가맹점 근로자의 노동법적 영역(임금 지급, 단체교섭) 등에서 가맹본부의 사용자책임을 확대하고 있음

(2)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에 관한 법적 규율

□ 근로자 오분류 지침('15.7월 연방노동부 근로기준국)

○ 전연방노동부는 1차적으로 공정근로기준법상 최저임금과 연장근로 수당 규정을 더 많은 근로자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근로자 오분류에 대한 광범위하고 엄격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근로자 오분류 지침」을 발표함

- 프랜차이즈 관계에서도 프랜차이즈 관계 이상의 일상적 지배를 받는 가맹점주는 「공정근로기준법」에 따라 **가맹본부의 근로자**로 재분류 될 수 있음

□ 커버롤(Coverall) 사건(가맹본부와 가맹점주의 법적 관계)

○ 실질적으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노동법상 사용자이고, 가맹점주는 가맹본부의 근로자라는 점을 인정한 사건임

○ 프랜차이즈 업계 선두주자 중 하나인 커버롤 가맹본부가 프랜차이즈 관계에서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지배를 넘어서 가맹점의 일상적 운영 등을 지배하거나 지시하였으므로 가맹점주의 노동법상 사용자성을 인정함

- 법원은 가맹본부에 대하여 가맹점주를 공정근로기준법에 따라 자신의 근로자로 재분류하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명하고

-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의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 가맹점 근로자 역시 가맹본부의 근로자로 인정된다고 하였음

(3) 가맹본부와 가맹점 근로자에 관한 법적 규율

□ 공정근로기준법상 공동고용에 관한 새로운 행정지침('16.1월)

○ 공정근로기준법의 공동고용의 범위를 넓게 정의함

○ 작업장 구조의 변화에 따라 한 근로자가 둘 이상의 사용자에 의하여 공동 고용될 가능성 예를 들어, ①두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를 공유하고 근로시간 계획을 공동으로 조정하며, 근로자에 대한 감독권을 공유하거나 ② 중간사용자의 근로자가 다른 공동사용자에게 노동력을 제공하거나 다른 공동사용자가 자신을 위해 중간사용자에게 채용, 임금 지급 등을 담당하도록 하는 경우 등이 최근에 더욱 일반화 됨

□ 브라우닝페리스 사건(가맹본부의 교섭의무 인정)('15.8월)

○ "둘 이상의 사업체가 모두 사용자이면서 기본적인 고용조건을 규율하는 사항들을 공유하거나 공동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들의 하나의 노동력에 대한 공동사용자임

- 공동사용자의 교섭범위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공동사용자는 원칙적으로 자신이 지배권한을 보유한 고용조건들에 관해서만 교섭하면 된다고 결정함

□ 맥도날드 사건

○ '12년 맥도날드 근로자들이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캠페인을 벌이고 맥도날드를 상대로 310건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 그 중 107건에 대하여 구제이익을 인정하였는데 맥도날드 직영점이 연루된 사건은 12건에 불과함

○ '14.12월 동 사안에서 연방노동위원회는 맥도날드가 "브랜드의 보호를 넘어서 연방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해여 가맹점주와 함께 잠정적인 공동사업자로 보기에 충분할 정도로 가맹점의 운영을 지배했다"고 하면서

- 노동조합 활동에 대하여 차별적 징계, 시간 단축, 해고 등의 조치를 취했으며, 노동조합과 근로조건에 관하여 논의한 근로자들에게 위협, 감시 등 과도록 제약 부과 등의 방식으로 개입하였다고 밝힘

- 따라서, 맥도날드에 대하여 43건의 부당노동행위 사건에서 양자의 공동사용자 지위 인정에 기초한 구제청구장을 발부할 것이라고 발표함

작업중지 강화

16. 근로자의 작업중지(제52조)

1. 개정배경

□ 현행규정

○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 시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긴급대피하면 그 사실을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의무**를 두고 있음

* **제26조(작업중지 등)②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바로 위 상급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사업주가 긴급 대피한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 규정을 두고 있으나, 위반 시 **별도의 제재규정은 없음**

□ 문제점

○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 시 **작업을 중지하고 긴급대피하면 상급자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 동 규정이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긴급대피 할 수 있는 권한이 근로자에게 있는지 여부**가 **불명확**하고,

- 특히, 그 불명확함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작업중지 할 수 있음을 **알지 못해서** 급박한 위험상황에서도 **작업중지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또한, **작업중지를 한 경우에** 사업주의 **불이익 조치** 우려로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행사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임**

2. 개정내용

○ **(근로자의 작업중지) 별도 조문**으로 **'근로자의 작업중지 및 긴급대피'**를 명시하여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 시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긴급대피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불이익 처우 금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에는

- 사업주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의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됨**

3.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법 률
제26조(작업중지 등) ②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바로 위 상급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①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 또는 그 밖에 부서의 장(이하 “관리감독자등”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관리감독자등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	④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

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담당부서	산업안전과	담당자	사무관 피해근	연락처	044-202-7723

참고1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관련 외국 입법례

1. 프랑스

□ '82년 12월 근로자의 권리로서 작업중지권 도입

○ 근로자는 생명 또는 건강에 "**심각하고 즉각적인 위험**"을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작업 상황으로부터 철수 할 수 있음

○ **(위험의 정도) 심각하고 즉각적인** 위험이어야 함

- **(심각성)** 근로자의 사망 또는 영구적·장기적인 장해를 초래할 사고나 질병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

- **(즉각성)** 근로자에게 즉각적인 위험 초래 가능성이 있어야 충족

○ **(행사의 방법)** 개별적 또는 집단적으로 행사 가능함

- 다만, 집단적 행사는 **해당 집단의 모든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해당 상황이 위협적이라고 **인지**하여야 법에서 보호하는 **작업중지권의 행사가 가능함**

- 근로자는 **특정 업무만을 거부할 수 있고** 고용계약의 **전반적인 이행을 거부할 수 없음**

- 또한, 작업중지가 **다른 근로자 또는 일반대중**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상황으로 연결되지 않아야 함**

○ **(행사의 절차)** 작업을 중지하려면 즉시 사용자에게 통보하거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에게 정보를 전달하여야 함

- **위험이 시정되기 전에는 작업을 재개할 의무가 없음**

□ 사업주의 의무

○ 작업 중지 시 사업주는 상황 개선 조치를 하여야 하며 **미조치로 인한 사고의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더 높은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함

○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기 전에 특정 **절차를 거치도록 하거나 작업중지권을 제한하는 내부 규정을 둘 수 없음**

□ 작업중지

○ 작업중지권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처벌할 수 없음**

* 법원은 근로자가 작업중지 결정을 내리는 경우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는 권리도 있다고 판단함

○ 다만,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남용**은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 수 있음**

2. 독일

□ **민법의 작업중지권(민법 제618조)**

○ 사업주는 근로계약의 **부수적 주의의무인 '안전배려의무'의 하나로 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할 의무**를 부담

* **민법 제618조(안전배려의무)** ① 노무청구권자는 그가 노무의 실행을 위해 제공해야 할 장소, 장비나 기구를 설치 및 유지하고 자신의 지시 또는 지휘하에 행해지는 노무제공을 규율함에 있어서 노무제공의 성질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노무제공자의 생명 및 건강이 위험으로부터 보호되도록 하여야 한다.

- 이에 근거하여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안전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거나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음**

* **독일 연방노동법원은** 사용자가 필수적인 안전배려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그러한 의무의 불이행이 근로자에 대한 건강상 위험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해당 근로 장소에서 근로를 거부할 수 있다고 판시함
(연방노동법원, 1998. 2. 17.판결, 9AZR 130/97.)

○ 정당한 작업중지권의 행사 시 **근로자는 임금청구권을 상실하지 않음**

□ **산업안전법 작업중지**(산업안전법 제9조)

○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사업주**는 근로자가 '**직접적이고 중대한**' 위험 상황에 직면한 경우 신속하게 **해당 위험 및 보호조치**를 **통지**받을 수 **있는 대비책을 마련**하여야 함

- 다만, **직접적, 중대한 위험**이 있음에도 **상관에게 보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스스로** 안전을 위한 **적합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작업중지권 행사를 이유로 **불이익 처우 할 수 없음**

○ **(사업주의 작업중지 의무)** 사업주는 **직접적, 중대한 위험 시 근로자가 작업장을 즉시 이탈,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함

- 사업주는 **직접적, 중대한 위험이 지속**된다면 **예외적으로** 근로자에게 **작업 재개를 요구**할 수 있음

3. 일본

○ **(사업주의 작업중지 의무)**사업주는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즉각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노동안전위생법 제25조)

* 위반 시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 벌금(노동안전위생법 제119조)

○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사업주가 작업중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 근로자가 해당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음**

- 다만, **시행통달**(1972.9.18. 기발 제602호9(4))*에서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노무급부거절권이 부정되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함

* **"노동안전위생법 제25조는 사업주의 의무로서**, 재해발생 긴급 시에 근로자를 대피시켜야 함을 **규정**한 것이나, **객관적으로 산업재해 발생이 임박했**을 경우에는 사업자의 조치를 기다릴 필요 없이 근로자는 긴급피난을 위해 자주적 판단에 의해 **당연히 그 작업 현장에서 대피할 수 있다는 것은 법의 규정을 기다릴 필요도 없는 것이다"라고 함**

- 아울러, **대법원은** 법 규정은 존재하지 않지만 생명과 신체 등에 위기가 발생할 경우의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인정**하고 있음

* **<치요다마루 사건>** 해저 케이블 부설선 승조원들이 **안전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업무명령을 거부하고 출항하지 않아 해고**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위험은 노사 쌍방이 만전의 배려를 다했다 하더라도 피하기 어려운 군사상의 것으로 해저선 부설선인 치요다마루 승조원이 본래 예상되는 해상작업에 따르는 위험이 아니고, **그 위험의 수준이 반드시 높지 않더라도** 치요다마루 승조원의 의사에 반하여 **위험을 감수하고 의무를 강제로 이행하게 할 수준이라고는 단정하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승조원의 해고를 무효라고 판단함

* **<신문수송임금 청구사건>** 근로자들 소속 노동조합과 대립하는 노조 조합원으로부터 **직장에서 폭행을 당하고, 직장에서 안전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노무급부를 거부한 사안에서**, 재판소는 "사용자가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고자 한다면 **그 생명 및 신체 등에 위해가 가해질 개연성이 지극히 높으며, 이 때문에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고 사회통념상 인정될 경우에는** 근로자의 사용자에 대한 노**무급부의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이행불능**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작업중지를 적법한 것으로 인정

참고2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에 대한 예시

[사례1] 높이가 2m 이상인 장소에서의 작업으로서 작업발판, 안전난간 또는 안전방망이 전반적으로 설치되지 않아 추락사고의 우려가 현저히 높은 경우

[사례2] 비계, 거푸집 동바리, 흙막이 지보공 등 가시설물의 설치가 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부적합한 자재의 설치 또는 사용불량으로 붕괴사고의 우려가 높은 경우

[사례3] 토사, 구축물, 공작물 등의 변형 또는 변위가 발생하거나 예상되어 붕괴사고의 우려가 높은 경우

[사례4] 가연성 또는 인화성 물질 취급장소에서 동시에 화기작업을 실시하여 화재 및 폭발사고의 우려가 높은 경우

[사례5] 화학물질 취급공정에서 부속설비의 심각한 고장, 변형 등으로 중대산업사고 발생의 우려가 높은 경우

[사례6] 밀폐공간작업으로 작업전 산소농도 측정을 하지 않거나 적정 공기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산소결핍에 의한 질식사고의 우려가 높은 경우

[사례7]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가스·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취급근로자의 건강장해가 현저히 우려되는 경우

17. 사업주의 작업중지(제51조)

1. 개정배경

□ 현행규정

○ **현행 제26조의 작업중지 제도**는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 시 사업주의 작업중지 의무를 중심**으로

- **근로자의 작업중지** 및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원인조사** 등 필요한 조치명령을 **함께 규정함**

□ 문제점

○ 산업재해의 급박한 발생 위험 시의 작업중지와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조치의 하나인 작업중지 목적이 다를 수 있음에도 **그 목적에 따른 요건과 절차가 명확한 구분 없이 하나로 규정**

2. 개정내용

○ 제51조에서는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중지와 구분하여,

-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 사업주에게 **작업중지**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함

-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하여 보고하는 **산업재해 발생 보고의무**와 **중대재해 발생 시** 사고 수습 및 2차 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지체 없이 하여야 하는 보고의무**는 **그 취지를 달리하므로**

- 중대재해 보고 의무 취지에 맞게 또한,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가 하여야 하는 조치를 한눈에 알 수 있도록 해당조문에서 규정**함

3.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법 률
제26조(작업중지 등)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한 후 작업을 다시 시작하여야 한다.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④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①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서 이동)	②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되면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담당부서	산업안전과	담당자	사무관 피해근	연락처	044-202-7723

18.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조치(제55조)

1. 개정배경

□ 현행규정

○ 현행법 제26조에서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고용노동부장관의 원인조사 의무와 안전보건진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함**

□ 문제점

○ 현행법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장관의 작업중지명령만 규정하고 있고, **중대재해 발생을 이유로** 작업중지 명령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

- 그러나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 시 장관의 **긴급피난적 작업중지 명령**이 그 본래적 취지와 다르게 급박한 위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제재조치*로서 활용**

*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시 → 사전 행정절차 없이 곧바로 사업장 전면 작업중지 명령

○ 만약, 제재조치로서 작업중지 처분을 하려면 **처분의 사전통지, 의견제출 등 행정처분**을 위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야 하며

- 제재조치가 아닌 행정상 급박한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즉시강제로서 작업중지 명령을 하려면 즉시강제의 성격에 맞게 그 요건과 절차**를 **엄격하게 규정할 필요**

* **'행정상 즉시강제'란** 급박한 행정상 장해를 제거할 필요가 있으나 **미리 의무를 부과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또는 그 성질상 의무를 부과해서는 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에**, 직접 국민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행정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으로 「도로교통법」의 주차위반차량 견인,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불법게임물의 수거·폐기, 「식품위생법」의 위해식품 판매금지 등이 있음

- 특히, 행정상 즉시 강제는 **①행정상 장해가 존재할 것 ②장해가 급박하여 의무를 부과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성실상 의무를 부과해서는 목적달성이 곤란할 것** 등의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 그 목적을 위하여 ③**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함

* 행정강제는 행정상 강제집행을 원칙으로 하며, 법치국가적 요청인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에 반하고, 기본권 침해의 소지가 큰 권력작용인 행정상 즉시강제는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강제수단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행정상 **즉시강제는 엄격한 실정법적상의 근거를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그 발동에 있어서는 법규의 범위 안에서도 **다시 행정상의 장해가 목전에 급박**하고, **다른 수단으로는 행정목적을 달성 할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하며, 이런 경우에도 그 행사는 **필요 최소한도에 그쳐야 함**을 내용으로 하는 조리상의 한계에 기속된다. (헌법재판소 2002. 10. 31. 2000헌가12)

○ 중대재해 발생 시 장관의 원인조사 등을 산업재해의 급박한 위험 시 작업중지 조항에 함께 규정하여, **원인조사와 작업중지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음**

- 특히, 원인조사 목적으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여 **즉시강제적 성격의 작업중지를 할 수 있는지 불분명**하고,

- 나아가 원인조사 목적으로 작업중지를 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다면 어느 범위까지 작업중지를 할 수 있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음

* 행정상 즉시강제와 행정조사는 그 목적과 내용을 달리함. 행정상 즉시강제는 실력을 가하여 행정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작용이지만, 행정조사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행정작용을 위한 자료를 얻기 위한 예비적·보조적 수단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점에서 서로 구별됨

○ 따라서,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 시 장관의 작업중지 명령과 구분하여

- 중대재해 발생 시 **즉시강제적 성격에 맞게** 장관의 작업중지 **명령의 요건과 그 해제절차**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

2. 개정내용

○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명령)** 중대재해 발생 시 장관의 즉시 작업중지 명령 **요건 및 대상 등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 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해당 작업, 같은 사업장 내** 중대재해가 발생한 작업과 **동일한 작업** 등 **산업재해 발생**이 **계속**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작업중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작업중지 명령 해제 절차)** 중대재해 발생 사업주의 신청에 따른 해제절차를 별도로 마련하되, 작업중지 해제에 관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함

○ **(고용노동부장관의 원인조사 등) 장**관의 중대재해 발생 **원인 조사는 작업중지를 할 수 있는 요건이 아님을 명확히** 함

- 아울러, **안전보건진단** 등은 **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을 위한 **목적**임을 분명히 함

○ **(중대재해 원인조사 방해 금지 등)** 현행법은 원인조사 방해 행위로 발생 현장 훼손을 규정하고 있지만

- **현장 훼손 외에도 원인조사**를 방해하는 행위가 있으므로 이를 구분하여 **각각의 독립된 의무**로서 규정함

○ 한편, 사업주가 장관의 작업중지 명령을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3. 즉시강제에 관한 유사입법례

□ 우리나라

【식품위생법 】

제17조(위해식품등에 대한 긴급대응)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조리·저장·소분 또는 운반(이하 이 조에서 "제조·판매등"이라 한다)되고 있는 식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긴급대응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국내외에서 식품등 위해발생 우려가 총리령으로 정하는 과학적 근거에 따라 제기되었거나 제기된 경우
2. 그 밖에 식품등으로 인하여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긴급대응방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식품등의 종류
2. 해당 식품등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치는 위해의 종류 및 정도
3. 제3항에 따른 제조·판매등의 금지가 필요한 경우 이에 관한 사항
4. 소비자에 대한 긴급대응요령 등의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식품등의 위해 방지 및 확산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긴급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식품등에 대하여는 그 위해 여부가 확인되기 전까지 해당 식품등의 제조·판매등을 금지하여야 한다.

④ ~⑨ (생 략)

4.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법 률
제51조(감독상의 조치)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제6항에 다른 명령이 지켜지지 아니하거나 위험 상태가 해제 또는 개선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기계·설비와 관련된 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장에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작업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중대재해가 발생한 해당 작업 2. 중대재해가 발생한 작업과 동일한 작업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토사·구축물의 붕괴, 화재·폭발,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누출 등으로 인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그 재해가 발생한 장소 주변으로 산업재해가 확산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작업을 중지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에는 작업중지 해제에 관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작업중지 해제의 요청 절차 및 방법,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작업중지 등)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원인 규명 또는 예방대책 수립을 위하여 중대재해 발생원인을 조사하고, 근로감독관과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진단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제56조(중대재해 원인조사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원인 규명 또는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을 위하여 그 발생 원인을 조사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⑤ 누구든지 중대재해 발생현장을 훼손하여 제4항의 원인조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중대재해 발생 현장을 훼손하거나 제1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원인조사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④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원인조사의 내용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담당부서	산업안전과	담당자	사무관 피해근	연락처	044-202-7723

건설업 산업재해 예방책임 강화

19. 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제67조)

1. 신설배경

○ **건설공사**는 통상적으로 **계획·설계·시공 등 건설공사 全 단계***에서 **발주자, 건설공사 도급인(시공자), 설계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감리자)가 **참여**

- 그 중 **발주자**는 공사계획·설계·시공 등 **건설사업 全 과정**에서 공사기간, 공사금액 등을 결정하는데 **매우 큰 영향을 미침**

* 발주자가 공사계획 후 설계자를 통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설계완료후 시공자를 선정하여 작성된 설계도서에 따라 완공된 건축물을 최종 인수

○ 또한, 건설공사는 계획·설계·시공 등의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고 있어, **효과적인 건설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건설공사를 **계획**하고 **설계하는 단계**부터 **예방조치*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함

- 그러나,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건설공사과정에서의 재해예방 조치에 대하여 집중되어 있음

* 설계시 안전시설 검토미비 : 설계도서에 건물 외부비계나 거푸집동바리의 설치도면이 누락되어 시공자가 임의로 설치하다가 비계(동바리) 붕괴

* 설계시 안전한 작업방법 검토미비 : 지붕공사, 외부마감 창호·미장공사 등 고소작업시 안전한 작업을 위한 시공방법에 대한 설계검토 누락

○ 따라서, **건설공사의 계획·설계단계부터 안전 및 보건 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발주자의 안전 및 보건 조치 의무를 규정할 필요**

2. 신설내용

○ 법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에서 **발주자도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하도록 명시

○ 또한, 건설공사에서의 **발주자 지위를 고려**하여, 발주자가 건설공사 **계획·설계 등 단계별**로 이행하여야 할 **안전·보건상의 조치의무를** 규정

- **(계획)** 건설공사 시 중점 유해·위험과 이를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을 담은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

- **(설계)**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유해·위험요인의 감소대책을 담은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등의 설계도서(설계안전보건대장)를 설계자에게 작성토록 하고 설계자의 최종 설계도서 납품 시 이를 확인하도록 함

- **(시공)** 설계안전보건대장을 건설공사 도급인에게 제공, 이를 반영하여 안전작업 계획을 담은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이행여부 확인

○ 아울러,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3. 외국 입법례: [참고1,2] 참조

4.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법 률
<신 설>	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 계획단계: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위험요인과 이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할 것 2. 건설공사 설계단계: 제1호에

	따른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위험요인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확인할 것 3. 건설공사 시공단계: 건설공사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에게 제2호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그 수급인에게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것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대장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담당부서	산업안전과	담당자	사무관 최재훈	연락처	044-202-7724

참고1 외국 입법례

(1) 영국의 CDM 제도

□ 도입배경

○ 기존의 안전입법을 통해 건설산업의 재해통계가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의 경우 타 산업보다 사망 발생률이 높음

- 건설현장의 위험의 발생을 줄이는 데 작업 전의 계획과 경영관리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판단

○ 안전법령으로 건설CDM(Construction Design Regulation) 1994과 건설업안전보건복지규정(CHSW: The Construction Health, Safety and Welfare Regulations 1996) 제정

□ '15년 CDM 개정내용

○ **(대상)** '07년 CDM에서는 직영공사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15 개정 시 모든 건설공사 포함

○ **(선임)** CDM Coordinator(안전보건조정자) 선임제를 폐지하고 **주설계자(Principal Designer) 선임의무 신설하고** 기존 안전보건조정자의 역할을 주설계자에게 부여

○ **(신고)** 작업일수 30일 이상에서 출역근로자수 20명이상이며 30일 이상인 건설공사로 개정

- 누계 출역근로자수 총 500인·일 이상인 건설공사는 기존과 동일

□ '15년 CDM 주체별 주요 책무

○ 발주자는 충분한 공사기간, 자원의 배분 등을 포함하는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하고,

- 사업관련 정보를 모든 설계자와 시공자에게 제공하여야 함

- 사업기간 중 안전보건계획의 이행과 점검을 수행하여야 함

- 착공 전 주시공자가 작성한 시공계획 및 주설계자의 안전보건자료 준비 확인

- 다수의 설계자와 시공자가 있는 경우 주설계자와 주시공자를 선임

○ 주설계자(Principal Designer)는 착공 전 설계단계에 안전보건 관리 및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

- 계획수립 시 설계, 기술요인, 조직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공사기간을 산정함

- 시공 또는 구조물 유지보수 등 작업 중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안전보건 위험요인을 도출하고 제거 또는 관리대책 마련

- 모든 설계자에게 안전보건 책무사항 주지시켜야 함

- 공사기간중 주시공자(Principal contractor)와 안전보건관련 정보 공유와 의사소통 유지

○ 주시공자(Principal contractor)는 모든 근로자의 안전보건 및 복리조치가 효율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조정 역할 수행

- 근로자(또는 근로자 대표)에게 안전보건 및 복리 관련 주요 내용 조언

- 주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안전보건정보를 근로자(또는 근로자 대표)에게 제공하거나 검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단, 국가기밀, 개인정보 등은 제공 불가)

※ 주설계자와 주시공자 선임을 하지 못할 경우 발주자가 해당 업무를 직접 수행

□ CDM 개정 이력

개정이력	주요내용
CDM 1994	○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에게 안전보건에 관한 책무 부여
CDM 2007	○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설계자와 발주자의 이행사항을 규정 – 발주자는 **CDM Coordinator를 선임**, 안전보건 책무를 대행하여 설계·시공자의 안전보건 이행사항 등 관리
CDM 2015	○ CDM 2007과 유사하나 제도의 적용 대상을 **직영공사까지 확대** – **CDM Coordinator 선임제를 폐지**하고 **주설계자(Principal Designer)를 선임**하여 설계·시공단계의 안전보건계획 및 관리 역할 부여

(2) EU의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제도 [Council Directive 92/57/EEC]

□ 선임, 안전보건계획, 사전신고 규정 [Article 3]

○ 발주자 또는 감독자는 1명 이상의 시공자가 있는 경우 공사준비 및 공사 단계의 안전보건관리를 수행하기 위한 안전보건조정자(Coordinators)를 1명 이상 선임하여야 함

○ 발주자 또는 감독자는 착공전 Article 5(b)에 의거하여 작성된 고위험작업의 안전보건계획을 확인하여야 함

- EU 회원국은 경영진 및 모든 근로자 협의를 거쳐 안전보건조정자 선임에 대한 규정(the first subparagraph)을 부분 적용할 수 있음 단, 다음 사항의 경우는 제외함

- Annex II에 열거된 특정 고위험을 수반하는 작업시

- 본 조항의 3항에 의거 사전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작업시

○ 발주자 또는 감독자는 착공전 신고양식(Annex III)을 사용하여 작성된 선임신고서를 관계 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20명 이상 근로자가 출역하며 작업일수 30일 이상인 건설공사

- 누계 출역인원이 총 500 인·일 이상인 건설공사

□ 공사준비 단계의 안전보건조정자의 책무[Article 5]

○ Article 3(안전보건조정자 선임)에 의거 선임된 '안전보건조정자'는 공사 준비 단계에 다음과 같은 책무를 수행

(a) Article 4(공사준비 단계의 발주자 또는 감독자 책무)의 규정 이행에 대한 조정

(b) 현장 작업내용을 고려하여 적용하여야 하는 규정을 반영한 안전보건계획 작성하여야 하며, 해당 계획에는 부속서(Annex) II에 기술된 작업(굴착, 고소작업 등 고위험 작업)에 1개 이상 해당하는 작업에 관한 구체적인 조치를 반드시 포함

© 후속작업 중 반영해야 할 연관 안전보건정보를 포함하여 공사의 특성에 대한 적정한 자료 준비

□ 공사단계의 안전보건조정자의 책무 [Article 6]

○ Article 3(안전보건조정자 선임)에 의거 선임된 '안전보건조정자'는 공사단계에 다음과 같은 책무를 수행하여야 함

(a) 예방 및 안전의 일반원칙 이행내용을 조정

- 동시 또는 연속되는 작업내용이나 절차를 계획하기 위하여 결정하여야 할 기술적, 조직적인 사항

- 작업 또는 작업단계 완료까지 소요되는 기간 산정

(b) 사업주와 필요시 근로자, 전문기능인력(self-employed persons) 보호를 확보하기 위한 관련 규정 이행의 조정

- Article 8[Directive 89/391/EEC(근로자의 안전보건 향상조치 안내)의 Article 6(사업주의 일반의무)에 기술된 규정의 지속적인 적용

- Article 5(b)에 기술된 고위험작업 장소에서 안전보건계획 이행

(c) 공정진행 및 공정의 변경을 고려하여 Article 5(b)에 기술된 안전보건계획 및 Article 5(c)에 기술된 공사특성별 안전보건정보 등 자료의 수정 또는 수정 요청

(d) 동일 근로자를 사용하는 다수 사업주(successive employers)를 포함하여 사업주간 협력체계 조직, 근로자 보호와 사고 및 업무상 질병 예방, Article 8[Directive 89/391/EEC(근로자의 안전보건 향상조치 안내)]의 Article 6(4)[1]에 의거 제공된 상호간의 정보제공을 위한 사업주의 안전보건 활동의 조정

(e) 원활한 공정진행을 점검하기 위한 방식 조정

(f) 허가된 자만 현장출입을 할 수 있는 조치 마련

□ 독일의 안전보건조정자 제도

□ 선임 규정 (BGV A1 Section 6)

○ **(선임)** 시공자(또는 직영사업자)는 다수의 근로자 상호간 안전보건 관리를 위하여 안전보건조정자(Coordinators)를 선임하여야 함

1) 같은 장소에서 다수 공종 동시 작업시 사업주간 협력, 재해예방 조치의 조정, 근로자에게 위험관련 정보제공 의무

참고2 국내의 발주자 등의 정의

구 분	정 의
건설기술진흥법	“**발주청**”이란 건설공사 또는 기술용역을 발주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건설산업기본법	“**발주자**”란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 한다.
건축법	"**건축주**"란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이하 "건축물의 건축 등"이라 한다) 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 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전기공사업법	“**발주자**"란 전기공사를 공사업자*에게 도급을 주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하도급 주는 자는 제외한다. * "공사업자"란 제4조제1항에 따라 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정보통신공사업법	"**발주자**"란 공사(용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공사업자(용역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受給人)으로서 도급받은 공사를 하도급(下都給)하는 자는 제외한다. * "용역"이란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공사에 관한 조사, 설계, 감리, 사업관리 및 유지관리 등의 역무를 하는 것을 말한다.
소방시설공사업법	"**발주자**"란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 및 방염(이하 "소방시설공사등"이라 한다)을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발주자”**란 문화재수리, 실측설계 또는 감리를 문화재수리업자, 문화재실측설계업자 또는 문화재감리업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受給人)으로서 도급받은 문화재수리를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구 분	정 의
주택법	"**사업주체**"란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다.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 라.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자
건설근로자고용개선에 관한 법률	1. "사업주(事業主)"란 근로자를 고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업(이하 "건설업"이라 한다)을 하는 자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면허·허가·등록 등을 받거나 한 자를 말한다. 2. "건설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3. "**원수급인(元受給人)**"이란 발주자로부터 건설업의 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4. "**하수급인(下受給人)**"이란 원수급인으로부터 건설업의 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주와 그로부터 건설업의 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4. "**원수급인**"이란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최초로 사업을 도급받아 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발주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직접 하는 부분(발주자가 직접 하다가 사업의 진행경과에 따라 도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직접 하는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발주자를 원수급인으로 본다. 5. "**하수급인**"이란 원수급인으로부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하는 자와 그 자로부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하는 자를 말한다.

20. 기계·기구 등에 대한 건설공사도급인의 안전조치(제76조)

1. 신설배경

○ **최근** 고층 건설공사 시 건설자재를 인양하는데 사용되는 **타워크레인 사고가** 급증하고 **대형 인명피해 사고가 자주 발생***

* 사고발생 시점별로는 **설치·해체작업 중 20건(62.5%), 사용 중 12건** 사고
사고 원인별로는 **작업방법 불량 16건, 설비결함 13건,** 태풍 등 기타사유 3건

○ 특히, **건설공사 또는 조선업**에서는 타워크레인이 필수 요소인데 **최근 5년간 타워크레인 사망사고(23) 중 65.2%(15)가 설치·해체과정**에서 발생

- 그러나, 건설공사에서 타워크레인 임대업체, 설치·해체 업체는 영세소규모 사업주가 대부분으로 작업 시 안전관리에 취약함

- 따라서, 계약에 관계없이 **건설현장 등 사업장에서 안전**을 총괄·관리하는 건설공사 도급인(원청)이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타워크레인 등의 설치부터 해체**에 이르기까지 **全 과정**에 대하여 **안전 및 보건 조치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할 필요

2. 신설내용

○ **건설공사의 도급인**은 **타워크레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사용 또는 설치·해체작업에 대한 직접 계약관계 여부에 관계없이**

- 자신의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기구 또는 설비 등이 **설치·작동**하고 있는 경우 또는 이를 **설치·해체·조립 하는 등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 **유해·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한편,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3.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법 률
< 신 설>	제76조(기계·기구 등에 대한 건설공사도급인의 안전조치) 건설공사도급인은 자신의 사업장에서 타워크레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 등이 설치되어 있거나 작동하고 있는 경우 또는 이를 설치·해체·조립하는 등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담당부서	산업안전과	담당자	사무관 류경호	연락처	044-202-7725

21.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등록(제82조)

1. 신설배경

○ 타워크레인 **조종작업, 설치·해체 작업** 등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대해서는 **자격·면허 등을 가진 근로자가** 작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제47조 및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 의거 타워크레인 조종작업,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 등 21개 작업

- 그러나, **타워크레인의 설치·해체업체*의 대부분**은 영세한 개인사업자가 작업 시마다 그때그때 근로자**를 모집하여 설치·해체 작업을 수행하므로

* 타워크레인 설치·해체팀의 등록기준이 없어 영세한 비전문업체 난립 [임대업체에 소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전국에서 약 130개팀이 활동 중]

**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개정('06.10.23)에 따라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자격 취득 과정을 이수한 근로자는 약 1,475명임

- **숙련도가 낮고, 안전작업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로 인하여 **다수의 산업재해 발생**

○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사업자에 대해 **등록제 도입**하고, 안전수칙 미준수로 **중대재해 발생 시 행정처분 등을 통한 사후관리 체계 마련**

2. 신설내용

○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에 대하여 **등록제를 도입**하고,

-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자로 하여금** 유해·위험 기계·기구의 **설치·해체 작업을 하도록 의무화**

○ 한편,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영위한 자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 사업주가 **미등록자**에게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을 하도록**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3. 신 · 구조문대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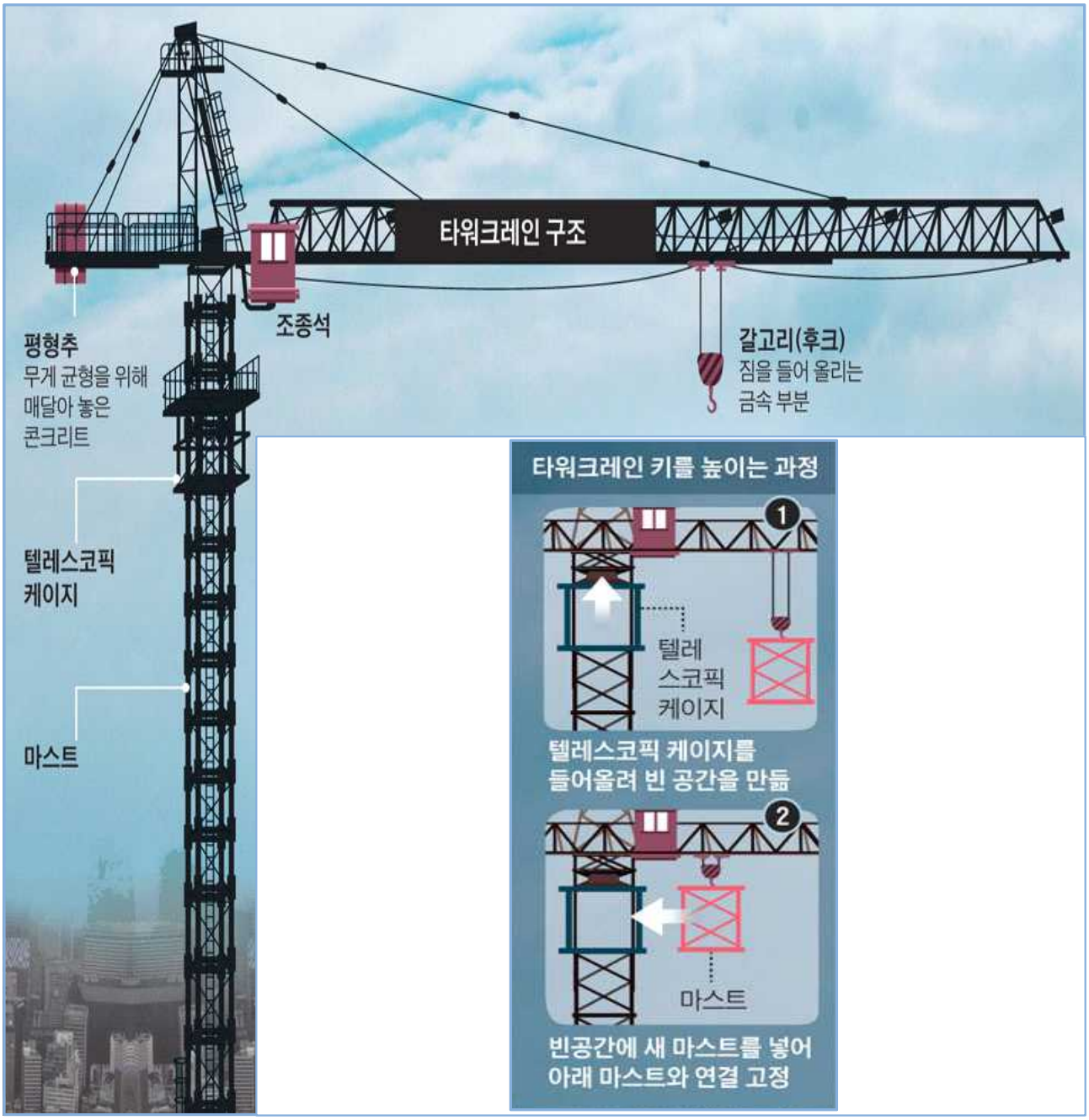
현 행	개 정 법 률
<신 설>	제82조(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의 등록 등) ① 타워크레인을 설치하거나 해체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로 하여금 타워크레인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에 대해서는 제21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로, “지정”은 “등록”으로 본다.

담당부서	산업안전과	담당자	사무관 류경호	연락처	044-202-7725

참고1 타워크레인 구조 및 텔레스코핑 작업절차

□ **(타워크레인 구조)** 마스트, 메인지브, 카운터지브, 균형추, 연결바, 캣헤드, 선회장치, 트롤리, 훅블록, 유압상승장치, 운전실 등으로 구성

□ **(텔레스코핑 작업절차)** 유압실린더 동작을 통해 케이지 거치대에 있는 마스트를 삽입하는 형태로서 이 과정을 지속 반복하는 구조임



참고2 타워크레인 주요 원인별 사고사례

작업절차 미준수	❍ **턴테이블과 마스트 체결핀 일부 미설치 상태에서 텔레스코픽케이지 하강 [사망 1명]** - **2014년 1월** 마스트 연장 작업 중 턴테이블과 최상부 마스트의 체결핀 일부를 미체결한 상태에서 텔레스코픽케이지를 하강하는 상태에서 무너짐으로 근로자 떨어짐	
안전대 미착용	❍ **안전대 미착용 상태에서 마스트 내부 이동중 실족 [사망 1명]** - **2016년 9월** 텔레스코핑케이지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위해 마스트 내부 이동 중 떨어짐	
줄걸이 작업불량	❍ **신호수 미배치 상태에서 줄걸이 작업 병행 중 하강하는 훅 블록에 맞음 [사망 1명]** - **2010년 12월** 마스트 상승작업을 위해 지상의 마스트 결속준비 중 훅 블록에 맞음	
유지보수 불량	❍ **권상 와이어로프 파단으로 낙하 인양물 맞음 [사망 1명]** - **2014년 9월** 인양·회전 중이던 인양물이 권상 와이어로프의 파단으로 인해 하부로 떨어져 그 충격으로 작업 중인 근무자가 맞음	
부품결함	❍ **설계 사양보다 직경이 작은 지브 연결핀 사용 [사망 1명]** - **2017년 1월** 인양작업 중 메인 지브가 파단되면서 옥상층에서 거푸집 작업중인 근로자가 낙하하는 지브에 맞음	
설치불량	❍ **마스트 연장 작업 중 마스트 사다리 이탈로 떨어짐 [사망 2명]** - **2016년 11월** 마스트 연장작업 중 인양된 마스트내부 사다리가 이탈되면서 떨어짐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영업비밀 심사

22.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제110조)

1. 개정배경

□ 현행규정

○ 제39조제1항의 유해성·위험성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및 이를 함유한 제제(이하 "대상화학물질")를 **양도·제공하는 자**는

- **물질안전보건자료**(이하 "MSDS")*를 **작성**하고 대상화학물질을 **양도·제공받는 자에게 제공**하도록 함

* 화학물질의 명칭,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취급 주의사항, 유해성·위험성 등 16가지 항목을 기재한 자료로서 해당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비치

□ 문제점

<1>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 현행은 MSDS **작성자를 '양도·제공자'**로 규정함에 따라 대상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여 **직접 취급**하고 **양도·제공은 하지 않는 경우** MSDS **작성 의무가 제외**되어 사각지대가 발생함

○ 또한 **MSDS에 기재하는 구성성분**은 국제기준*과 달리 유해·위험성 물질 뿐만 아니라 유해·위험성 미분류 물질까지 포함

* 외국은 UN GHS(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에 관한 세계조화시스템, The 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 에 따라 유해·위험한 화학물질만을 MSDS에 기재

- 이에 따라 **수입 화학제품의 경우** 국외 제조사가 제공한 MSDS에 **유해성·위험성 미분류 물질**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관련 정보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 MSDS 작성 대상을 '유해·위험한 **화학물질 및 이를 함유한 제제**'로 정하고 이를 **"대상화학물질"로 약칭**하고 있으나

- **'제제(製劑)'**라는 용어는 주로 의약품에 사용되므로 의약품에 한정되지 않는 MSDS 작성대상에는 적정하지 않음

- 또한 **"대상화학물질"**은 그 용어만으로는 규제 대상 및 목적을 유추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 MSDS 기재 내용 중 **"대상화학물질의 명칭"**은 MSDS를 작성하는 제품의 명칭을 기재하도록 하려는 것이나 그 의미가 명확히 전달되지 않음

* (예) 에틸알코올을 함유한 제품의 명칭이 "크리네타놀"인 경우 MSDS의 '대상화학물질의 명칭'란에는 제품명인 "크리네타놀"을 기재해야 하나 구성성분의 하나인 '에틸알코올'을 기재하는 것으로 오인

<2>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출

○ 현행은 대상화학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만 MSDS를 제공하므로 정부는 유통되는 화학물질의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움

- 이로 인해 메틸알코올 사고 등과 같이 근로자의 건강장해가 발생한 경우 정부의 예측·대응이 어렵고,

* 메틸알코올: 기기의 냉각제로 사용(신기술) → 고속분사 → 건강장해 발생

- 근로자가 질병의 업무연관성 규명 등을 위해 MSDS가 필요한 경우에도 사업주가 제공을 거부하거나 휴·폐업으로 제공받지 못함

2. 개정내용

<1>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 **MSDS 작성자**를 화학물질의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에서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로 변경하고(안 제110조제1항)

- MSDS에 기재하는 구성성분을 국제기준과 같이 유해·위험한 화학물질로 함(제1항제2호)

○ **'제제'**를 '혼합물'로 변경하고, MSDS 작성대상의 **약칭인 '대상화학물질'**을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로 변경하여 의미가 명확히 전달되도록 함

* 시행령 제32조의2(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등 제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제'의 경우 단일화학물질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변경

○ MSDS 기재 내용 중 **'대상화학물질의 명칭'을 '제품명'으로 변경**하여 제품의 구성성분 명칭과 혼동하지 않도록 함(제1항 제1호)

<2>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출

○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화학물질을 양도·제공받은 자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도 MSDS를 제출**하도록 하고

○ **MSDS에 기재하지 않은 구성성분**(유해성·위험성 미분류 물질)이 있는 경우 **화학물질의 명칭·함유량**을 MSDS와 함께 제출하도록 함

- 다만, ①현행과 같이 **MSDS**에 유해성·위험성 미분류 물질을 포함하여 **모든 구성성분을 기재**하거나,

- ②수입자가 국외 제조자로부터 **제출대상 물질**이 **유해성·위험성 미분류 물질임을 확인**하는 서류를 받아 제출하는 경우는 별도 제출을 면제

○ 한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하지 않은 구성성분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3.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법 률
제4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등) ①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제는 제외한다) 중 제39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이하 "대상화학물질"이라 한다)를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자료(이하 "물질안전보건자료"라 한다)를	제110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 ① 화학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혼합물로서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라 한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자료(이하 "물질안전보건자료"라 한다)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 사항이나 작성 방법을 정할 때 「화학물질관리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대상화학물질의 명칭 1의2.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2. 안전·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 3. 건강 유해성 및 물리적 위험성 4.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신 설>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 사항이나 작성 방법을 정할 때 「화학물질관리법」 및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제품명 2.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 중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3. 안전 및 보건상의 취급 주의 사항 4.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5. 물리·화학적 특성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 중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이 전부 포함된 경우 2.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수입하려는 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국외에서 제조하여 우리나라로 수출하려는 자(이하 “국외제조자”라 한다)로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힌 화학물질 외에는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이 없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서류를 받아 제출한 경우
⑥ 대상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생긴 때에는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반영하여 대상화학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공 방법·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 사항을 반영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등의 제출 방법·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담당부서	화학사고예방과	담당자	사무관 연현석	연락처	044-202-7757

참고1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제출의무 개정전·후 비교

	개정 전(현행)	개정 후	비고
MSDS 작성 대상	▪ 유해·위험한 화학물질 및 이를 함유한 제제 ▪ 약칭 - 대상화학물질	▪ 유해·위험한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 ▪ 약칭 -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	▪ 작성 대상은 동일 ▪ 명칭만 변경
MSDS 작성 주체	▪ 대상화학물질 양도·제공자	▪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 제조·수입자	▪ 양도·제공없이 제조·수입하여 사용하는 자도 포함
MSDS 기재항목	▪ 대상화학물질의 명칭	▪ 제품명	▪ 작성대상은 동일하나, 이를 명확히 함 (예시) 구성성분인 “에틸알코올”이 아닌 제품명인 “크리네타놀”을 기재
	▪ 모든 구성성분의 명칭·함유량	▪ 구성성분 중 유해·위험한 화학물질의 명칭·함유량	▪ 유해·위험성 물질만을 기재 ↳ (예시) “에틸알코올 92%”
MSDS 제출	▪ 미규정	▪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	▪ 정부는 MSDS를 제출받아 관리

23.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제111조)

1. 개정배경

□ 현행규정

○ 화학물질 및 이를 함유한 제제를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가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MSDS를 작성·제공**하도록 규정

□ 문제점

○ **MSDS의 작성자**를 제조·수입자로 변경함에 따라 MSDS 작성자와 제공자가 달라짐

2. 개정내용

○ MSDS의 제공에 관한 내용을 별도의 항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 MSDS 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가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MSDS를 제공하도록 함**(제1항)

- 또한, MSDS의 **변경주체를 제조·수입한 자로 명확히 하고,** 변경된 MSDS를 제조·수입자(제조·수입자로부터 양도·제공받아 다시 제공하는 자 포함)가 다시 제공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제1항~제3항)

○ 한편, 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는자에게 MSDS를 제공하지 않은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 **변경된 MSDS**를 양도·제공 받은자에게 **제공하지 않은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3.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법 률
제4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등) ①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제는 제외한다) 중 제39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령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

으로 정하는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이하 "대상화학물질"이라 한다)를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자료(이하 "물질안전보건자료"라 한다)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 사항이나 작성방법을 정할 때 「화학물질관리법」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대상화학물질의 명칭 1의2.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2. 안전·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 3. 건강 유해성 및 물리적 위험성 4.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여야 한다.
⑥ 대상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생긴 때에는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반영하여 대상화학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신속하게 제공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공 방법·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담당부서	화학사고예방과	담당자	사무관 연현석	연락처	044-202-7757

24.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부 비공개 승인 등(제112조)

1. 개정배경

□ 현행규정

○ 화학제품 양도·제공자는 영업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 또는 제제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MSDS에 적지 않을 수 있고,

- **의사, 보건관리자, 근로자대표 등**은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가 발생하는 등의 경우 화학제품 양도·제공자 또는 취급 사업주에게 **MSDS에 적지 않은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음**

□ 문제점

○ 현재는 화학제품 양도·제공자가 **영업비밀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MSDS에 적지 않을 수 있음**

- 이로 인해 **국내 MSDS 중 '영업비밀'이 적용된 비율**이 '09년에 45.5%에서 '14년에 **67.4%로 증가**되어 MSDS 2/3 이상이 정보를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는 실정(공단 연구 결과)

- 영업비밀 기재 남용으로 인해 화학물질 정보에 대한 노동자의 알권리가 심각하게 제약되고 직업병 발생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음

  * 삼성전자 백혈병 사건 및 가습기살균제 사고 등에서 MSDS 상 구성성분의 명칭 등을 영업비밀을 이유로 비공개하여 제도 개선의 필요성 제기

○ 또한 근로자의 직업병 예방 및 치료를 위해 **의사 등에게 비공개 정보의 제공 요구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 직업병 발생 원인 규명 또는 업무상 질병 여부 판단 등 공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게도 **정보제공 요구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2. 개정내용

○ MSDS 상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을 비공개**하려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 비공개 심사 업무는 안전보건공단에 위탁함

- **비공개 승인**을 받더라도 노출시 **유해성·위험성을 유추**할 수 있도록 **대체명칭*** 및 **대체함유량**을 기재(제1항)

* 대체명칭에는 물질의 주된 작용기가 나타나므로 노출 시 인체 유해성 등을 유추할 수 있어 노동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가 제공

○ 고용노동부장관은 **화학물질 명칭과 함유량의 대체 필요성** 및 **MSDS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비공개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제2항)

○ **비공개 승인 제외대상 물질** 및 **승인기준**은 **노·사 합의에 따라 결정**될 수 있도록

- 해당 사항 제·개정 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정하도록 함**(제1항·제3항)

○ 승인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고 신청을 통해 **연장 승인**을 받은 경우 **승인 유효기간을 5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함(제4항·제5항)

○ 신청인은 MSDS 비공개 정보 승인결과(연장 승인결과 포함)에 대하여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제6항)

-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승인 또는 연장승인 여부를 다시 결정하도록 함(제7항)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 또는 연장 승인을 받은 경우 등에 대해 **승인사실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제8항)

○ 비공개 정보의 제공 요구권자에 **역학조사 실시 기관** 및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를 추가**(제10항)

○ 한편,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대체자료로 작성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 비공개 정보 제공 요구에도 불구하고 대체자료로 적힌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3.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법 률
제4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상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대상화학물질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업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 2. 제1호의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	제112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부 비공개 승인 등) ① 제1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업비밀과 관련되어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지 아니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대체할 수 있는 명칭 및 함유량(이하 “대체자료”라 한다)으로 적을 수 있다. 다만,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본

	문에 따른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의 대체 필요성, 대체자료의 적합성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승인에 관한 기준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승인의 유효기간은 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도 계속하여 대체자료로 적으려는 자가 그 유효기간의 연장승인을 신청하면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다음 날부터 5년 단위로 그 기간을 계속하여 연장승인할 수 있다. ⑥ 신청인은 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승인 또는 연장승인에 관한 결과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 또는 연장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5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승인 또는 연장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승인 또는 연장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제5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승인 또는 연장승인을 받은 경우 2. 제1항, 제5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승인 또는 연장승인을 받은 화학물질이 제1항 단서에 따른 화학물질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⑨ 제5항에 따른 연장승인과 제8항에 따른 승인 또는 연장승인의 취소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⑪ 근로자를 진료하는 의사, 제16조에 따른 보건관리자(같은 조	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 및

제3항에 따른 보건관리전문기관을 포함한다), 제17조에 따른 산업보건의 또는 근로자대표 등은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가 발생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대상화학물질을 양도·제공하는 자 또는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주에게 제2항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지 아니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 제공을 요구받은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보건을 유지하거나 직업성 질환 발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가 발생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에게 제1항에 따라 대체자료로 적힌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 제공을 요구받은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근로자를 진료하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 2. 보건관리자 및 보건관리전문기관 3. 산업보건의 4. 근로자대표 5. 제165조제2항제38호에 따라 제141조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疫學調査) 실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에 따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담당부서	화학사고예방과	담당자	사무관 연현석	연락처	044-202-7757

25.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정보 제출 등(제113조)

1. 신설배경

○ 개정법률 제110조 및 제112조에 따라 화학물질 제조·수입자가 MSDS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거나 비공개 정보 승인 심사를 신청할 때 **구성성분, 함유량 및 유해성·위험성 등의 정보 등을 제출**하여야 하나,

- **수입 화학물질의 경우** 국외 제조사가 제품복제 등을 우려하여 해당 정보를 국내 수입업체에 제공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 **(경총 건의) 수입화학물질의 경우** 해외 제조사가 구성성분 공개를 꺼려 판매를 중단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국내 제품생산 차질(특히 반도체·디스플레이)로 약 1.5~2.5조원의 손실이 추정되므로 심사 면제가 필요

- 따라서 MSDS 정보 비공개 사전승인 등 제도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수입화학물질은** 국외 제조사가 **국내 수입업체를 거치지 않고 제출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신설내용

○ 수입화학물질의 경우 MSDS, 구성성분 정보, MSDS 비공개정보 승인 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는 **국외 제조자가 국내 수입자를 갈음할 수 있는 자를 선임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국외 제조자에 의해 선임된 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MSDS를 제출한 경우는 동 MSDS를 수입자에게 제공하도록 함

○ 한편, 국외제조자가 제113조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거짓으로 수행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3.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법 률
<신 설>	제113조(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정보 제출 등) ① 국외제조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선임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수입하는 자를 갈음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제출 2. 제1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확인서류의 제출 3. 제112조제1항에 따른 대체자료 기재 승인,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승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 ② 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해당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수입하는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제조자에 의하여 선임되거나 해임된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출 및 제공 방법·내용, 제3항에 따른 신고 절차·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담당부서	화학사고예방과	담당자	사무관 연현석	연락처	044-202-7757

그 외 유해·위험 방지조치 등

26. 위험성 평가의 실시(제36조)

1. 개정배경

□ 현행규정

○ 사업주가 사업장 내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등의 **유해·위험요인을 스스로 찾아내어 이를 평가**하고,

- **개선대책을 수립·실행**하여 **근로자 보호조치를 하도록 함**

○ 위험성을 결정 및 조치하는 방법, 절차,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17-36호)

□ 문제점

○ 위험성평가는 사업장의 기계·설비, 화학물질 등 전반적인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여 개선하는 것으로 유해·위험 기계 및 물질과 같은 특정분야의 재해예방 조치에 대한 조문보다 앞서 규정할 필요

○ 현행 제1항의 **"위험성을 결정하고"**에 대한 **의미가 모호**하고

- 위험성평가시 작업장 내 모든 유해·위험 요인을 발굴, 개선하기 위하여 **고시에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 참여' 규정을 상향**할 필요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7-36호)제5조(위험성평가의 방법)제1항제4호: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거나 감소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를 참여하게 할 것

2. 개정내용

○ **위험성 평가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유해·위험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선행하도록 조문 위치를 이동함**

○ '위험성을 결정하고'를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로 구체화하여 규정함

○ 또한, 현행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자 참여에 대한 근거를 법에 명시**(제2항)

3.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법 률
제41조의2(위험성평가)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행동, 그 밖에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내용 및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유해·위험요인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하고 조치하는 방법, 절차,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절차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담당부서	화학사고예방과	담당자	사무관 김남균	연락처	044-202-7753

27. 역학조사(제141조)

1. 개정배경

□ 현행규정

○ 현행 법 제43조의2에서는 직업성 질환의 발생원인 등을 규명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역학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

□ 문제점

○ 역학조사에 관한 시행규칙은 방법, 대상, 절차에 관한 사항은 위임을 받아 규정되어 있으나, **역학조사에 참석할 수 있는 사람에 관한 규정은 위임 없이 규정**

2. 개정내용

○ 역학조사에 **참석**할 수 있는 **사람**, 참석할 수 있는 역학조사의 **종류** 등에 관한 **위임 근거**를 **신설**(노동계 요구사항)하고,

- 고용노동부장관이 참석을 허용한 사람의 참석을 거부·방해한 경우 및 참석한 사람이 비밀을 누설한 경우의 **처벌 규정 등**을 신설

* ▲비밀을 누설한 참석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정당한 사유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한 자 또는 참석이 허용된 자의 역학조사 참석을 거부·방해한 자: 1천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3.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법 률
제43조의2(역학조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성 질환의 진단 및 예방, 발생 원인의 규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로자의 질병과 작업장의 유해요인의 상관관계에 관한 직업성	제141조(역학조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성 질환의 진단 및 예방, 발생 원인의 규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로자의 질환과 작업장의 유해요인의 상관관계에 관한 역학조

질환 역학조사[이하 "역학조사(疫學調査)"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사(이하 “역학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 또는 근로자대표,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요구할 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역학조사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시행규칙> 제107조의2(역학조사의 대상 및 절차 등) ③ 공단은 사업주 또는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역학조사에 사업주 또는 근로자대표를 참석시켜야 한다	
②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해서는 아니 된다.
< 신 설 >	③ 누구든지 제1항 후단에 따라 역학조사 참석이 허용된 사람의 역학조사 참석을 거부하거나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 신 설 >	④ 제1항 후단에 따라 역학조사에 참석하는 사람은 역학조사 참석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제43조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 「국

양급여기록 및 건강검진 결과,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정보, 「암관리법」에 따른 질병정보 및 사망원인 정보 등을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기록 및 건강검진 결과,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정보, 「암관리법」에 따른 질병정보 및 사망원인 정보 등을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역학조사의 방법·대상·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⑥ 역학조사의 방법・대상・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담당부서	산업보건과	담당자	이민진 사무관	연락처	044-202-7744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재 강화

28. 근로자 사망 시 사업주 처벌 강화(제167조)

1. 개정배경

□ 현행규정

○ 「산업안전보건법」은 **의무주체를 사업주로 규정**하고, 사업주의 의무 이행확보를 담보하기 위하여 **법 위반 시 형벌을 부과**하는바,

- 법 제66조의2는 사업주가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근로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음

□ 문제점

○ 제66조의2는 사업주가 안전 ·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형을 선고받고도 동일한 죄를 반복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대해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2. 개정내용

○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불이행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현행처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동일한 죄를 범한 경우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3.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법 률
제66조의2(벌칙)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	제167조(벌칙) ①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9조제1항 또는 제63조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 설 >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담당부서	산재예방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대원	연락처	044-202-7690

29. 도급인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 위반 시 처벌 강화(제169조)

1. 개정배경

□ 현행규정

○ 산업재해예방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법령에서 정한 사업주의 의무규정 위반에 대해 형벌 부과

○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조치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문제점

○ 유해·위험 작업의 **도급이 일반화**되고 **산업재해 대부분**이 **수급인 근로자에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 '96년 개정 당시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후 **도급인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이 한 차례도 없었음**

* 제29조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그러나,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작업 장소, 시설 등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관리권**을 가지고 있는 **도급인의 책임이 중요함**

○ 또한, 개정법률에서 도급인과 수급인이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를 동일하게 부담**하도록 규정하였으므로 **그 위반에 따른 제재도 강화하여 규정**할 필요

2. 개정내용

○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 위반 시 **제재를 강화하여**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 안전 및 보건조치 위반으로 **근로자 사망 시 수급인과 동일하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동일한 죄를 범한 경우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체계정비를 위한 조문이동 및 인용관계에 있는 조문 정비

3.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법 률
제66조의2(벌칙)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7조(벌칙) ①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9조제1항 또는 제63조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67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3조제3항, 제34조제2항, 제34조의4제1항, 제38조제3항, 제38조의3, 제46조, 제47조제1항 또는 제49조의2제1항 후단을 위반한 자	제16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4조제1항 후단, 제63조, 제76조, 제81조, 제82조제2항, 제84조제1항, 제87조제1항, 제118조제3항, 제123조제1항, 제139조제1항 또는 제140조제1항을 위반한 자

2. 제34조의4제2항, 제38조제4항, 제38조의2제4항, 제43조제2항, 제49조의2제3항·제10항 또는 제51조제6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2. 제45조제1항 후단, 제46조제5항, 제53조제1항, 제87조제2항, 제118조제4항, 제119조제4항 또는 제131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3. 제58조제3항 또는 같은 조 제5항 후단(제5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업무를 제165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로서 그 업무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한 자 4. 제8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 업무를 제165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로서 그 업무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한 자 5. 제93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 업무를 제165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로서 그 업무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한 자 6. 제98조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 업무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한 자

담당부서	산재예방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대원	연락처	044-202-7690

30. 양벌규정(제173조)

1. 개정배경

□ 현행규정

○ 현행법에서 의무규정을 이행해야 하는 자는 대부분 사업주인데, 사업주가 법인인 경우, 법인은 **범죄행위능력과 수형능력이 없어 법인을 행위자로 처벌할 수 없음**

- 이에 **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양벌규정을 두어** 행위자와 함께 법인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음

□ 문제점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양벌규정)**은 기업 규모, **개인이냐 법인**이냐 구별 없이 **동일한 처벌수준 규정**

- **법인의 대표자나 근로자가 위반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자와 법인에게 부과되는 벌금형**의 **법정형도** 같음

- 따라서, **법인에 대하여 실제 선고되는 벌금액이** 법인인 **사업주에게는 형벌의 효과가 크지 않음**

- 특히,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 등 기업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자산규모가 상당하면 상당할수록 행위자와 같은 벌금액은** 소액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금액으로는 **범죄 억제라는 효과가 미미**할 수밖에 없음

○ 따라서, 법인의 자산규모와 벌금액을 비교하여 볼 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형벌의 **예방적 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인인 사업주에게는 **벌금형을 상향할 필요**

2. 개정내용

○ 대표자나 그 밖의 종업원이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양벌규정을 이원화하여 법인 사업주 또는 도급인**에게 **10억원 이하 벌금 부과**

3.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법 률
제7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6조의2, 제67조, 제67조의2 또는 제68조부터 제70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67조제1항 또는 제168조부터 제172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그 개인에게는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7조제1항의 경우: 10억원 이하의 벌금 2. 제168조부터 제172조까지의 경우: 해당 조문의 벌금형

담당부서	산재예방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대원	연락처	044-202-7690

31. 형벌과 수강명령의 병과(제174조)

1. 신설배경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처벌은 제재적 의미보다는 **예방적 목적에** 더 큰 의미가 있음

○ 그러나, 제재조치를 받더라도 산업재해의 피해, 안전·보건 조치의 중요성 등에 대하여 인식하지 못하면 **제재조치는 산업재해 방지**라는 **수단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음**

○ 현행 **「형법」**은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에만 수강명령을 할 수 있어*** 법원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사람에게 **실형이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수강명령을 할 수 없음**

* 울산지방법원 2015. 8. 13. 선고 2015고단1264 판결 등

- 그러나 제재조치가 산업재해 예방이라는 목적을 실질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실형이나 벌금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수강명령 제도를 도입**할 필요

2. 신설내용

○ **(수강명령 병과) 법원에서**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에 대한 책임으로 유죄 판결**(선고유예 제외) 선고 시 **200시간 범위**에서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함**

○ **(수강명령 내용)** 안전보건 교육을 포함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함

3.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법 률
<신 설>	제174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① 법원은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9조제1항 또는 제63조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에게 유죄의 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200시간의 범위에서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다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는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징역형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할 경우에는 형기 내에 각각 집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이 벌금형 또는 형의 집행유예와 병과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집행하고,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교정시설의 장이 집행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은 다

	음 각 호의 내용으로 한다. 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 2.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수강명령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담당부서	산재예방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대원	연락처	044-202-7690

〈 붙 임 〉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
(법률 제16272호)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제16272호, 2019.1.15., 전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
3.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4.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5.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6. “도급”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7. “도급인”이란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발주자는 제외한다.
8. “수급인”이란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9. “관계수급인”이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한다.

10. “건설공사발주자”란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11. “건설공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나.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마.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

12. “안전보건진단”이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을 발견하고 그 개선대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조사·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13. “작업환경측정”이란 작업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사업주가 유해인자에 대한 측정계획을 수립한 후 시료(試料)를 채취하고 분석·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공사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정부의 책무)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1. 산업 안전 및 보건 정책의 수립 및 집행

2. 산업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

3.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 마련, 지도 및 지원

4. 사업주의 자율적인 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지원

5.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홍보·교육 등 안전문화 확산 추진

6.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시설의 설치·운영

7.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관리

8. 산업 안전 및 보건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및 지도·감독

9. 그 밖에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 및 건강의 보호·증진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그 밖의 관련 단체 및 연구기관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① 사업주(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같다)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고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따라야 한다.

1.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발주·설계·제조·수입 또는 건설을 할 때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지켜야 하고, 발주·설계·제조·수입 또는 건설에 사용되는 물건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설계·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

2. 원재료 등을 제조·수입하는 자

3. 건설물을 발주·설계·건설하는 자

제6조(근로자의 의무) 근로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켜야 하며, 사업주 또는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 공단 등 관계인이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7조(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공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기본계획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8조(협조 요청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고용노동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규제를 하려면 미리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제2항에 따른 협의과정에서 해당 규제에 대한 변경을 요구하면 이에 따라야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국무총리에게 협의·조정 사항을 보고하여 확정할 수 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주, 사업주단체,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단 등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 및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련 기관·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8조 및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에 관한 정보

2. 「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정보

3.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 또는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

제9조(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으로 처리한 산업 안전 및 보건 등에 관한 정보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행정기관과 공단에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이하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이라 한다)을 공표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도급인의 사업장(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에 도급인의 산업재해발생건수등에 관계수급인의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산업재해발생건수등을 공표하기 위하여 도급인에게 관계수급인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표의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산업재해 예방시설의 설치·운영)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지도시설, 연구시설 및 교육시설

2. 안전보건진단 및 작업환경측정을 위한 시설

3.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시설

4.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

제12조(산업재해 예방의 재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재원(財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에서 지원한다.

1. 제11조 각 호에 따른 시설의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산업재해 예방 관련 사업 및 비영리법인에 위탁하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의 사업비

제13조(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와 관련된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을 정하여 사업주에게 지도·권고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같은 항에 따라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하여야 할 조치

2.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할 조치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을 정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분야별로 표준제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표준제정위원회의 구성·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제1절 안전보건관리체제

제14조(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 ① 「상법」 제170조에 따른 주식회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표이사는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비용, 시설, 인원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업장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이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라 한다)은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와 제18조에 따른 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한다.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관리감독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이하 “관리감독자”라 한다)에게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관리감독자가 있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안전관리담당자를 각각 둔 것으로 본다.

제17조(안전관리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안전관리자”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②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자격·업무·권한·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를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으로 늘리거나 교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21조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하 “안전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보건관리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보건관리자”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②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보건관리자의 수·자격·업무·권한·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보건관리자를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으로 늘리거나 교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21조에 따라 지정받은 보건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하 "보건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9조(안전보건관리담당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안전보건관리담당자"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다만,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가 있거나 이를 두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수·자격·업무·권한·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으로 늘리거나 교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20조(안전관리자 등의 지도·조언) 사업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안전 또는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지도·조언하는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자

2. 보건관리자

3. 안전보건관리담당자

4.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제21조(안전관리전문기관 등) ①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이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기준·방법 및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지정 절차,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4.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각각 해당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제22조(산업보건의)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나 그 밖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도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한다. 다만,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를 보건관리자로 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이하 “산업보건의”라 한다)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및 산업보건의의 자격·직무·권한·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자, 근로자단체, 사업주단체 및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 방법, 업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관한 사항

2. 제15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항 중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3.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와 근로자는 제2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제25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하는 내용으로 심의·의결해서는 아니 된다.

⑥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에게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⑦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의결되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절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5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3.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4.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이하 “안전보건관리규정”이라 한다)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반할 수 없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규정 중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반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그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으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

③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할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적인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변경 절차)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7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준수) 사업주와 근로자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지켜야 한다.

제28조(다른 법률의 준용) 안전보건관리규정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기준법」 중 취업규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안전보건교육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건설 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외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제3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30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등) ① 사업주는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 정도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2. 근로자가 제11조제3호에 따른 시설에서 건강관리에 관한 교육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

3. 관리감독자가 산업 안전 및 보건 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

② 사업주는 제29조제2항 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가 채용 또는 변경된 작업에 경험이 있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1조(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① 건설업의 사업주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로 하여금 제33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 일용근로자가 그 사업주에게 채용되기 전에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시간·내용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① 사업주(제5호의 경우는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기관의 장을 말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33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을 받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안전보건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안전관리자

3. 보건관리자

4. 안전보건관리담당자

5. 다음 각 목의 기관에서 안전과 보건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가. 안전관리전문기관

나. 보건관리전문기관

다. 제74조에 따라 지정받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라. 제96조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검사기관

마. 제100조에 따라 지정받은 자율안전검사기관

바. 제120조에 따라 지정받은 석면조사기관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시간·내용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안전보건교육기관) ①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또는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안전보건교육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기준·방법 및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 절차 및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 안전보건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제21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지정”은 “등록”으로 본다.

제4장 유해·위험 방지 조치

제34조(법령 요지 등의 게시 등) 사업주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각 사업장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35조(근로자대표의 통지 요청) 근로자대표는 사업주에게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통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제75조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경우에는 노사협의체를 말한다)가 의결한 사항

2. 제47조에 따른 안전보건진단 결과에 관한 사항

3. 제49조에 따른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4. 제6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도급인의 이행 사항

5. 제110조제1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6.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7조(안전보건표지의 설치·부착) ①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시설·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안내 또는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그림, 기호 및 글자 등으로 나타낸 표지(이하 이 조에서 “안전보건표지”라 한다)를 근로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같은 조 단

서에 따른 사람을 포함한다)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안전보건표지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모국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표지의 종류, 형태, 색채, 용도 및 설치·부착 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38조(안전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②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2.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3.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4.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④ 사업주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하는 조치(이하 “안전조치”라 한다)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보건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보건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흄(fume, 열이나 화학반응에 의하여 형성된 고체증기가 응축되어 생긴 미세입자를 말한다)·미스트(mist,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작은 액체방울을 말한다)·산소결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2. 방사선・유해광선・고온・저온・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3.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4. 계측감시(計測監視),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精密工作)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5.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6. 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하는 보건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40조(근로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 근로자는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라 사업주가 한 조치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치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41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① 사업주는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고객응대근로자”라 한다)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이하 “폭언등”이라 한다)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하여 고객응대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고객응대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는 고객응대근로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제출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유해·위험 방지에 관한 사항을 적은 계획서(이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주 중 산업재해발생률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스스로 심사하고, 그 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해당 제품의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2.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또는 장소에서 사용하거나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크기, 높이 등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사업주(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사업주는 제외한다)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할 때 건설안전 분야의 자격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제44조제1항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유해·위험설비에 대해서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제출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 또는 건설공사를 중지하거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스스로 심사하거나 제4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심사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그 심사결과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⑥ 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사업주로서 제5항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및 그 심사결과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둔 사업주는 해당 건설공사의 공법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그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43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의 확인 등) ① 제42조제4항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대한 심사를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이행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이행에 관하여 스스로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건설공사 중에 근로자가 사망(교통사고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이행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른 확인 결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대로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조치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 등의 개선, 사용중지 또는 작업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시설 등의 개선, 사용중지 또는 작업중지 등의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제출)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가 있는 경우 그 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 누출, 화재 및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이하 “중대산업사고”라 한다)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이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적합하다고 통보받기 전에는 관련된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를 가동해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할 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45조(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공정안전보고서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공정안전보고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심사를 받은 공정안전보고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46조(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등) ① 사업주와 근로자는 제45조제1항에 따라 심사를 받은 공정안전보고서(이 조 제3항에 따라 보완한 공정안전보고서를 포함한다)의 내용을 지켜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45조제1항에 따라 심사를 받은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실제로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45조제1항에 따라 심사를 받은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보완하여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상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 제3항에 따른 보완 상태가 불량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는 공정안전보고서의 변경을 명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공정안전보고서를 다시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47조(안전보건진단)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추락·붕괴, 화재·폭발,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누출 등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제48조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이하 “안전보건진단기관”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진단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진단 명령을 받은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진단기관에 안전보건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안전보건진단기관이 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보건진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가 요구할 때에는 해당 안전보건진단에 근로자대표를 참여시켜야 한다.

④ 안전보건진단기관은 제2항에 따라 안전보건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안전보건진단 결과보고서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 및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안전보건진단의 종류 및 내용, 안전보건진단 결과보고서에 포함될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안전보건진단기관) ① 안전보건진단기관이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보건진단기관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기준·방법 및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안전보건진단기관의 지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 안전보건진단기관에 관하여는 제21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안전보건진단기관”으로 본다.

제49조(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 명령)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종합적인 개선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장, 시설, 그 밖의 사항에 관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개선계획(이하 “안전보건개선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사업주에

게는 제47조에 따라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은 사업장

2.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사업장

4. 제106조에 따른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② 사업주는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50조(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제출 등) ① 제49조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③ 사업주와 근로자는 제2항 전단에 따라 심사를 받은 안전보건개선계획서(같은 항 후단에 따라 보완한 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포함한다)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①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 또는 그 밖에 부서의 장(이하 “관리감독자등”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관리감독자등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53조(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조치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사업장의 건설물 또는 그 부속건설물 및 기계·기구·설비·원재료(이하 "기계·설비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에게 현저한 유해·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기계·설비등에 대하여 사용중지·대체·제거 또는 시설의 개선, 그 밖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이하 "시정조치"라 한다)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해당 기계·설비등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완료할 때까지 시정조치 명령 사항을 사업장 내에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해당 기계·설비등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유해·위험 상태가 해소 또는 개선되지 아니하거나 근로자에 대한 유해·위험이 현저히 높아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계·설비등과 관련된 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용중지 명령 또는 제3항에 따른 작업중지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그 시정조치를 완료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1항에 따른 사용중지 또는 제3항에 따른 작업중지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해제 요청에 대하여 시정조치가 완료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중지 또는 제3항에 따른 작업중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①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되면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장에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작업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중대재해가 발생한 해당 작업

2. 중대재해가 발생한 작업과 동일한 작업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토사·구축물의 붕괴, 화재·폭발,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누출 등으로 인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그 재해가 발생한 장소 주변으로 산업재해가 확산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작업을 중지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에는 작업중지 해제에 관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작업중지 해제의 요청 절차 및 방법,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56조(중대재해 원인조사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원인 규명 또는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을 위하여 그 발생 원인을 조사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중대재해 발생 현장을 훼손하거나 제1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원인조사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④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원인조사의 내용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 등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그 발생 개요·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제1절 도급의 제한

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도급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그 작업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1. 도금작업

2. 수은, 납 또는 카드뮴을 제련, 주입, 가공 및 가열하는 작업

3. 제118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

② 사업주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작업을 도급하여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그 작업을 하도록 할 수 있다.

1. 일시·간헐적으로 하는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

2. 수급인이 보유한 기술이 전문적이고 사업주(수급인에게 도급을 한 도급인으로서의 사업주를 말한다)의 사업 운영에 필수 불가결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③ 사업주는 제2항제2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④ 제2항제2호에 따른 승인의 유효기간은 3년의 범위에서 정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 사업주가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면 승인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는 제3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⑥ 사업주는 제2항제2호 또는 제5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항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제2호,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승인, 연장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가 제8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승인, 연장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⑧ 제2항제2호,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승인, 연장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기준·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59조(도급의 승인) ① 사업주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중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 등이 있는 물질의 취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을 도급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에 관하여는 제58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0조(도급의 승인 시 하도급 금지) 제5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승인, 같은 조 제5항 또는 제6항(제5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연장승인 또는 변경승인 및 제59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작업을 도급받은 수급인은 그 작업을 하도급할 수 없다.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제2절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제62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장에서는 그 사업장에서 사업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을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총괄책임자를 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권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 순회점검

3.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4.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제29조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가.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나. 작업 장소에서 화재·폭발, 토사·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

6.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② 제1항에 따른 도급인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안전보건교육 지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65조(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 ① 다음 각 호의 작업을 도급하는 자는 그 작업을 수행하는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 시작 전에 수급인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

1. 폭발성·발화성·인화성·독성 등의 유해성·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 또는 그 화학물질을 함유한 혼합물을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반응기·증류탑·배관 또는 저장탱크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개조·분해·해체 또는 철거하는 작업

2. 제1호에 따른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3. 질식 또는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작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

② 도급인이 제1항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해당 작업 시작 전까지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인이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도급인은 수급인이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은 제2항에 따른 요청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이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급 작업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계약의 이행 지체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66조(도급인의 관계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 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받은 작업과 관련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면 관계수급인에게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② 도급인은 제65조제1항 각 호의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에 수급인 또는 수급인 근로자가 도급받은 작업과 관련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면 수급인에게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3절 건설업 등의 산업재해 예방

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 계획단계: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위험요인과 이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할 것

2. 건설공사 설계단계: 제1호에 따른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위험요인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확인할 것

3. 건설공사 시공단계: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에게 제2호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그 수급인에게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것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대장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68조(안전보건조정자) ① 2개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한 건설공사발주자는 그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경우에 작업의 혼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하는 건설공사의 금액, 안전보건조정자의 자격·업무, 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9조(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변경 금지) ①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해당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은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해서는 아니 된다.

②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은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공법을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제70조(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① 건설공사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공사가 지연되어 해당 건설공사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사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1. 태풍·홍수 등 악천후, 전쟁·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그 밖에 계약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태의 발생 등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② 건설공사의 관계수급인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어 해당 건설공사가 지연된 경우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도급인에게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공사도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사기간을 연장하거나 건설공사발주자에게 그 기간의 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요청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71조(설계변경의 요청) ① 건설공사도급인은 해당 건설공사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설구조물의 붕괴 등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건축·토목 분야의 전문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건설공사발주자에게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건설공사발주자가 설계를 포함하여 발주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42조제4항 후단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공사중지 또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변경 명령을 받은 건설공사도급인은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건설공사의 관계수급인은 건설공사 중에 제1항에 따른 가설구조물의 붕괴 등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제1항에 따른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건설공사도급인에게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공사도급인은 그 요청받은 내용이 기술적으로 적용이 불가능한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반영하여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를 변경하거나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설계변경 요청을 받은 건설공사발주자는 그 요청받은 내용이 기술적으로 적용이 불가능한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반영하여 설계를 변경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설계변경의 요청 절차·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① 건설공사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이 건설공사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한다)을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사업의 규모별·종류별 계상 기준

2. 건설공사의 진척 정도에 따른 사용비율 등 기준

3. 그 밖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선박의 건조 또는 수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업비에 계상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도급인 또는 제4항에 따른 선박의 건조 또는 수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 예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도급인은 해당 건설공사를 하는 동안에 제74조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이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에서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를 받아야 한다.

②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업무의 내용, 지도대상 분야, 지도의 수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4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①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기준·방법,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관하여는 제21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본다.

제75조(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등의 구성·운영에 관한 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도급인은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이하 “노사협의체”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건설공사도급인이 제1항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각각 구성·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건설공사도급인은 제2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노사협의체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노사협의체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의 처리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노사협의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⑤ 노사협의체는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대피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⑥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건설공사도급인·근로자 및 관계수급인·근로자는 제3항에 따라 노사협의체가 심의·의결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⑦ 노사협의체에 관하여는 제24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노사협의체”로 본다.

제76조(기계·기구 등에 대한 건설공사도급인의 안전조치) 건설공사도급인은 자신의 사업장에서 타워크레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 등이 설치되어 있거나 작동하고 있는 경우 또는 이를 설치·해체·조립하는 등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절 그 밖의 고용형태에서의 산업재해 예방

제77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 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음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한다)의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할 것

2.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3.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의 유지·증진에 사용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8조(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로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는 그 중개를 통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로 물건을 수거·배달 등을 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9조(가맹본부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맹본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맹본부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의 설비나 기계, 원자재 또는 상품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 가맹점사업자와 그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가맹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프로그램의 마련·시행

2.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설치하거나 공급하는 설비·기계 및 원자재 또는 상품 등에 대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의 제공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프로그램의 내용·시행방법,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의 제공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6장 유해·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제1절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등에 대한 방호조치 등

제80조(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① 누구든지 동력(動力)으로 작동하는 기계·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아니 된다.

1. 작동 부분에 돌기 부분이 있는 것

2. 동력전달 부분 또는 속도조절 부분이 있는 것

3. 회전기계에 물체 등이 말려 들어갈 부분이 있는 것

③ 사업주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호조치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방호조치와 관련되는 장치를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와 근로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호조치를 해체하려는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1조(기계·기구 등의 대여자 등의 조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기구·설비 또는 건축물 등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자는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2조(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의 등록 등) ① 타워크레인을 설치하거나 해체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로 하여금 타워크레인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에 대해서는 제21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로, "지정"은 "등록"으로 본다.

제2절 안전인증

제83조(안전인증기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보호구(이하 "유해·위험기계등"이라 한다)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그 안전에 관한 성능과 제조자의 기술 능력 및 생산체계 등에 관한 기준(이하 "안전인증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인증기준은 유해·위험기계등의 종류별, 규격 및 형식별로 정할 수 있다.

제84조(안전인증) ① 유해·위험기계등 중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위해(危害)를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라 한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설치·이전하거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5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에서 같다)는 안전

인증대상기계등이 안전인증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제조·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2.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

3.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위험기계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그 유해·위험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 등을 평가받으려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안전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인증기준에 따라 안전인증을 할 수 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이하 “안전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자가 안전인증기준을 지키고 있는지를 3년 이하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주기마다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안전인증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기계등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명·모델명·제조수량·판매수량 및 판매처 현황 등의 사항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제조·수입 또는 판매에 관한 자료를 공단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⑦ 안전인증의 신청 방법·절차, 제4항에 따른 확인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85조(안전인증의 표시 등) ① 안전인증을 받은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유해·위험기계등이나 이를 담은 용기 또는 포장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의 표시(이하 “안전인증표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안전인증을 받은 유해·위험기계등이 아닌 것은 안전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안전인증에 관한 광고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안전인증을 받은 유해·위험기계등을 제조·수입·양도·대여하는 자는 안전인증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해서는 아니 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인증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제거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1. 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2. 제86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이 취소되거나 안전인증표시의 사용 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

제86조(안전인증의 취소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안전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안전인증표시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안전인증기준에 맞게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안전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2. 안전인증을 받은 유해·위험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 등이 안전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84조제4항에 따른 확인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관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이 취소된 자는 안전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취소된 유해·위험기계등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제87조(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제조 등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제조·수입·양도·대여·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할 수 없다.

1. 제8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안전인증이 전부 면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안전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86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이 취소되거나 안전인증표시의 사용 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제조·수입·양도·대여하는 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수거하거나 파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88조(안전인증기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84조에 따른 안전인증 업무 및 확인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기관을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인증기관(이하 “안전인증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기준·방법 및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신청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⑤ 안전인증기관에 관하여는 제21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안전인증기관”으로 본다.

제3절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제89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 ①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위험기계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이라 한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기준(이하 “자율안전기

준"이라 한다)에 맞는지 확인(이하 "자율안전확인"이라 한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면제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제조·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2. 제84조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제86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이 취소되거나 안전인증표시의 사용 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이 자율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90조(자율안전확인의 표시 등) ①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이나 이를 담은 용기 또는 포장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의 표시(이하 "자율안전확인표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신고된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이 아닌 것은 자율안전확인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자율안전확인에 관한 광고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신고된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을 제조·수입·양도·대여하는 자는 자율안전확인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해서는 아니 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율안전확인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제거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1. 제2항을 위반하여 자율안전확인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3. 제91조제1항에 따라 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 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

제91조(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 금지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신고된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신고한 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자율안전기준에 맞게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을 금지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고의 내용,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92조(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제조 등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을 제조·수입·양도·대여·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할 수 없다.

1.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신고가 면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3.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제91조제1항에 따라 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 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을 위반하여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을 제조·수입·양도·대여하는 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을 수거하거나 파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4절 안전검사

제93조(안전검사) ①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94조, 제95조 및 제98조에서 같다)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이하 “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을 사용하는 사업주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소유자가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안전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안전검사의 신청, 검사 주기 및 검사합격 표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검사 주기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종류, 사용연한(使用年限) 및 위험성을 고려하여 정한다.

제94조(안전검사합격증명서 발급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93조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에 합격한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검사합격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합격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업주는 그 증명서를 안전검사대상기계등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95조(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사용 금지)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안전검사대상기계등(제93조제2항에 따라 안전검사가 면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안전검사대상기계등

제96조(안전검사기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검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검사기관(이하 “안전검사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기준·방법 및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 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신청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⑤ 안전검사기관에 관하여는 제21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안전검사기관”으로 본다.

제97조(안전검사기관의 보고의무) 안전검사기관은 제9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98조(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 ① 제9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와 협의(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같은 항 전단에 따른 검사 기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검사 주기 등을 충족하는 검사프로그램(이하 “자율검사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정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라 안전검사대상기계등에 대하여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이하 “자율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으면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와 관련된 자격 및 경험을 가진 사람

2.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 교육을 이수하고 해당 분야의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②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③ 사업주는 자율안전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자율안전검사를 받으려는 사업주는 제100조에 따라 지정받은 검사기관(이하 “자율안전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자율안전검사를 위탁할 수 있다.

⑤ 자율검사프로그램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 요건, 인정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99조(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의 취소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을 취소하거나 인정받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검사를 하도록 하는 등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받은 경우

2.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인정받고도 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인정받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9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자율안전검사기관이 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이 취소된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00조(자율안전검사기관) ① 자율안전검사기관이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자율안전검사기관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기준·방법 및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 자율안전검사기관에 관하여는 제21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자율안전검사기관”으로 본다.

제5절 유해·위험기계등의 조사 및 지원 등

제101조(성능시험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인증대상기계등 또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안전성능의 저하 등으로 근로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위험기계등을 제조하는 사업장에서 제품 제조 과정을 조사할 수 있으며, 제조·수입·양도·대여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된 유해·위험기계등을 수거하여 안전인증기준 또는 자율안전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성능시험을 할 수 있다.

제102조(유해·위험기계등 제조사업 등의 지원)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유해·위험기계등의 품질·안전성 또는 설계·시공 능력 등의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안전성 향상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제조하는 자

   가. 안전인증대상기계등

   나.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다. 그 밖에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유해·위험기계등

2. 작업환경 개선시설을 설계·시공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제2항에 따른 등록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8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안전인증이 취소된 경우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면 지원한 금액에 상당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3. 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자에 대하여 등록을 취소한 날부터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2항에 따른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내용, 등록 및 등록 취소, 환수 절차, 등록 제한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03조(유해·위험기계등의 안전 관련 정보의 종합관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장의 유해·위험기계등의 보유현황 및 안전검사 이력 등 안전에 관한 정보를 종합관리하고, 해당 정보를 안전인증기관 또는 안전검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안전인증기관 또는 안전검사기관에 사업장의 유해·위험기계등의 보유현황 및 안전검사 이력 등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하여 유해·위험기계등의 보유현황 및 안전검사 이력 등 안전에 관한 종합정보망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제7장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조치

제1절 유해·위험물질의 분류 및 관리

제104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에게 건강장해를 일으키는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 등(이하 “유해인자”라 한다)의 유해성·위험성 분류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05조(유해인자의 유해성·위험성 평가 및 관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유해인자가 근로자의 건강에 미치는 유해성·위험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보 등에 공표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성·위험성 수준별로 유해인자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유해성·위험성 평가대상 유해인자의 선정기준, 유해성·위험성 평가의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06조(유해인자의 노출기준 설정)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05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위험성 평가 결과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107조(유해인자 허용기준의 준수) ① 사업주는 발암성 물질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유해인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는 작업장 내의 그 노출 농도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허용기준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유해인자를 취급하거나 정화·배출하는 시설 및 설비의 설치나 개선이 현존하는 기술로 가능하지 아니한 경우

2. 천재지변 등으로 시설과 설비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

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시 작업과 단시간 작업의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사업주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유해인자의 노출 농도를 제1항에 따른 허용기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8조(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 외의 화학물질(이하 “신규화학물질”이라 한다)을 제조하거나 수입

하려는 자(이하 “신규화학물질제조자등”이라 한다)는 신규화학물질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을 조사하고 그 조사보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일반 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신규화학물질을 수입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신규화학물질의 수입량이 소량이거나 그 밖에 위해의 정도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신규화학물질제조자등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유해성·위험성을 조사한 결과 해당 신규화학물질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경우 이를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가 제출되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 사항 등을 공표하고 관계 부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규화학물질제조자등에게 시설·설비를 설치·정비하고 보호구를 갖추어 두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⑤ 신규화학물질제조자등이 신규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조치하여야 할 사항을 기록한 서류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제109조(중대한 건강장해 우려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 또는 그 밖에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 또는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와 그 결과의 제출 또는 제105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위험성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명령을 받은 자는 유해성·위험성 조사 결과 해당 화학물질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해가 우려되는 경우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설·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조사 결과 및 자료를 검토하여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화학물질을 제105조제2항에 따라 구분하여 관리하거나 해당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한 자 또는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시설·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110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 ① 화학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혼합물로서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라 한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자료(이하 “물질안전보건자료”라 한다)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 사항이나 작성 방법을 정할 때 「화학물질관리법」 및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제품명

2.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 중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3. 안전 및 보건상의 취급 주의 사항

4.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5. 물리·화학적 특성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 중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이 전부 포함된 경우

2.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수입하려는 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국외에서 제조하여 우리나라로 수출하려는 자(이하 “국외제조자”라 한다)로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힌 화학물질 외에는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이 없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서류를 받아 제출한 경우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 사항을 반영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등의 제출 방법·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110조제3항에 따라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는 제외한다)는 제110조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받은 경우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2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부 비공개 승인 등) ① 제1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업비밀과 관련되어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지 아니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대체할 수 있는 명칭 및 함유량(이하 “대체자료”라 한다)으로 적을 수 있다. 다만,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의 대체 필요성, 대체자료의 적합성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승인에 관한 기준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승인의 유효기간은 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도 계속하여 대체자료로 적으려는 자가 그 유효기간의 연장승인을 신청하면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다음 날부터 5년 단위로 그 기간을 계속하여 연장승인할 수 있다.

⑥ 신청인은 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승인 또는 연장승인에 관한 결과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 또는 연장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5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승인 또는 연장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승인 또는 연장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제5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승인 또는 연장승인을 받은 경우

2. 제1항, 제5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승인 또는 연장승인을 받은 화학물질이 제1항 단서에 따른 화학물질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⑨ 제5항에 따른 연장승인과 제8항에 따른 승인 또는 연장승인의 취소 절차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거나 직업성 질환 발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가 발생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에게 제1항에 따라 대체자료로 적힌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 제공을 요구받은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근로자를 진료하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

2. 보건관리자 및 보건관리전문기관

3. 산업보건의

4. 근로자대표

5. 제165조제2항제38호에 따라 제141조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疫學調査) 실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에 따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제113조(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정보 제출 등) ① 국외제조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선임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수입하는 자를 갈음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제출

2. 제1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확인서류의 제출

3. 제112조제1항에 따른 대체자료 기재 승인,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승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

② 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그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해당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수입하는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제조자에 의하여 선임되거나 해임된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출 및 제공 방법·내용, 제3항에 따른 신고 절차·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사업주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5조(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용기 등의 경고표시)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용기 및 포장에 담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라 경고표시 기재 항목을 적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담은 용기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용기에 이미 경고표시가 되어 있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6조(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자료의 제공)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자료를 근로자 및 사업주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117조(유해·위험물질의 제조 등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하 “제조등금지물질”이라 한다)을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 직업성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근로자의 건강에 특히 해롭다고 인정되는 물질

2. 제105조제1항에 따라 유해성·위험성이 평가된 유해인자나 제109조에 따라 유해성·위험성이 조사된 화학물질 중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험·연구 또는 검사 목적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등금지물질을 제조·수입·양도·제공 또는 사용할 수 있다.

1. 제조·수입 또는 사용을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금지물질의 판매 허가를 받은 자가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판매 허가를 받은 자나 제1호에 따라 사용 승인을 받은 자에게 제조등금지물질을 양도 또는 제공하는 경우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제1호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가 같은 호에 따른 승인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 제2항제1호에 따른 승인 절차, 승인 취소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8조(유해·위험물질의 제조 등 허가) ① 제1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로서 대체물질이 개발되지 아니한 물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하 “허가대상물질”이라 한다)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허가대상물질의 제조·사용설비, 작업방법, 그 밖의 허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이하 “허가대상물질제조·사용자”라 한

다)는 그 제조·사용설비를 제2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그 기준에 적합한 작업방법으로 허가대상물질을 제조·사용하여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허가대상물질제조·사용자의 제조·사용설비 또는 작업방법이 제2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기준에 적합하도록 제조·사용설비를 수리·개조 또는 이전하도록 하거나 그 기준에 적합한 작업방법으로 그 물질을 제조·사용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허가대상물질제조·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3항을 위반한 경우

4. 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5. 자체검사 결과 이상을 발견하고도 즉시 보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⑥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2절 석면에 대한 조치

제119조(석면조사) ①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경우에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 또는 임차인 등(이하 “건축물·설비소유주 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이하 “일반석면조사”라 한다)한 후 그 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1.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지 여부

2.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 중 석면이 함유된 자재의 종류, 위치 및 면적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이나 설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설비소유주등은 제120조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이하 “석면조사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이하 “기관석면조사”라 한다)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석면함유 여부가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기관석면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제1항 각 호의 사항

2.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함유된 석면의 종류 및 함유량

③ 건축물·설비소유주등이 「석면안전관리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하여 석면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석면조사 또는 기관석면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건축물·설비소유주등이 일반석면조사 또는 기관석면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해당 건축물·설비소유주등에 대한 일반석면조사 또는 기관석면조사의 이행 명령

2.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는 자에 대하여 제1호에 따른 이행 명령의 결과를 보고받을 때까지의 작업중지 명령

⑤ 기관석면조사의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20조(석면조사기관) ① 석면조사기관이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기관석면조사의 결과에 대한 정확성과 정밀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석면조사기관의 석면조사 능력을 확인하고, 석면조사기관

을 지도하거나 교육할 수 있다. 이 경우 석면조사 능력의 확인, 석면조사기관에 대한 지도 및 교육의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석면조사기관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제2항에 따른 석면조사 능력의 확인 결과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기준·방법 및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 석면조사기관의 지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⑤ 석면조사기관에 관하여는 제21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석면조사기관”으로 본다.

제121조(석면해체·제거업의 등록 등) ① 석면해체·제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석면해체·제거업자”라 한다)의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안전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기준·방법 및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 석면해체·제거업자에 관하여는 제21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석면해체·제거업자”로, “지정”은 “등록”으로 본다.

제122조(석면의 해체·제거) ① 기관석면조사 대상인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함유량과 면적 이상의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해당 건축물·설비소유주등은 석면해체·제거업자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설비소유주등이 인력·장비 등에서 석면해체·제거업자와 동등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스스로 석면을 해체·제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는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하여 기관석면조사를 실시한 기관이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석면해체·제거업자(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건축물·설비소유주등을 말한다. 이하 제124조에서 같다)는 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작업을 하기 전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작업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신고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23조(석면해체·제거 작업기준의 준수) ①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석면해체·제거의 작업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는 자가 제1항의 작업기준에 따라 근로자에게 한 조치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4조(석면농도기준의 준수) ①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제122조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된 후 해당 작업장의 공기 중 석면농도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가 되도록 하고, 그 증명자료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및 측정방법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건축물·설비소유주등은 석면해체·제거작업 완료 후에도 작업장의 공기 중 석면농도가 제1항의 기준을 초과한 경우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해서는 아니 된다.

제8장 근로자 보건관리

제1절 근로환경의 개선

제125조(작업환경측정) ① 사업주는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이 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제2항에 따른 도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27조에서 같다)는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을 제126조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이하 “작업환경측정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작업환경측정 중 시료의 분석만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사업주는 근로자대표(관계수급인의 근로자대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 시 근로자대표를 참석시켜야 한다.

⑤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사업주로부터 작업환경측정을 위탁받은 작업환경측정기관이 작업환경측정을 한 후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본다.

⑥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관계수급인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 제127조 및 제175조제5항제15호에서 같다)에게 알려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설비의 설치·개선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한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라 작업환경측정을 위탁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기관에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할 수 있다.

⑧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의 방법·횟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26조(작업환경측정기관) ① 작업환경측정기관이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측정·분석 결과에 대한 정확성과 정밀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측정·분석능력을 확인하고, 작업환경측정기관을 지도하거나 교육할 수 있다. 이 경우 측정·분석능력의 확인, 작업환경측정기관에 대한 교육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작업환경측정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작업환경측정기관을 평가하고 그 결과(제2항에 따른 측정·분석능력의 확인 결과를 포함한다)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기준·방법 및 결과의 공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 작업환경측정기관의 유형, 업무 범위 및 지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⑤ 작업환경측정기관에 관하여는 제21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 본다.

제127조(작업환경측정 신뢰성 평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하여 그 신뢰성을 평가할 수 있다.

② 사업주와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신뢰성을 평가할 때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뢰성 평가의 방법·대상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28조(작업환경전문연구기관의 지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작업장의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작업환경관리방법 등에 관한 전문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유해인자별·업종별 작업환경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해인자별·업종별 작업환경전문연구기관의 지정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절 건강진단 및 건강관리

제129조(일반건강진단) ①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일반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② 사업주는 제135조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 또는 「건강검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건강검진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서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일반건강진단의 주기·항목·방법 및 비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30조(특수건강진단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특수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이하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라 한다)에 종사하는 근로자

2. 제1호, 제3항 및 제131조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결과 직업병 소견이 있는 근로자로 판정받아 작업 전환을 하거나 작업 장소를 변경하여 해당 판정의 원인이 된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

②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의 배치 예정 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배치전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배치 전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따른 유해인자로 인한 것이라고 의심되는 건강장해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 중 보건관리자 등이 사업주에게 건강진단 실시를 건의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이하 “수시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135조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의 시기·주기·항목·방법 및 비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31조(임시건강진단 명령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같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들에게 유사한 질병의 증상이 발생한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특정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이하 “임시건강진단”이라 한다)의 실시나 작업전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임시건강진단의 항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32조(건강진단에 관한 사업주의 의무) ① 사업주는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근로자대표를 참석시켜야 한다.

②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할 때에는 직접 또는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을 한 건강진단기관에 건강진단 결과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개별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는 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③ 사업주는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의 결과를 근로자의 건강 보호 및 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④ 사업주는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건강진단의 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장소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의 제한, 작업환경측정 또는 시설·설비의 설치·개선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사업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는 그 조치 결과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3조(건강진단에 관한 근로자의 의무) 근로자는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지정한 건강진단기관이 아닌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건강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4조(건강진단기관 등의 결과보고 의무) ① 건강진단기관은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근로자 및 사업주에게 통보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한 기관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그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사업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5조(특수건강진단기관) ①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 특수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 또는 수시건강진단을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건강진단을 할 수 있는 기관(이하 “특수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아야 한다.

②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진단·분석 결과에 대한 정확성과 정밀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진단·분석능력을 확인하고, 특수건강진단기관을 지도하거나 교육할 수 있다. 이 경우 진단·분석능력의 확인, 특수건강진단기관에 대한 지도 및 교육의 방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특수건강진단기관을 평가하고 그 결과(제3항에 따른 진단·분석능력의 확인 결과를 포함한다)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 기준·방법 및 결과의 공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⑤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 신청 절차,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⑥ 특수건강진단기관에 관하여는 제21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본다.

제136조(유해인자별 특수건강진단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작업장의 유해인자에 관한 전문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유해인자별 특수건강진단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해인자별 특수건강진단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7조(건강관리카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사람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의 직업병 조기발견 및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관리카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건강관리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에 따라 요양급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건강관리카드를 제출함으로써 해당 재해에 관한 의학적 소견을 적은 서류의 제출을 대신할 수 있다.

③ 건강관리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은 그 건강관리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④ 건강관리카드를 발급받은 사람 중 제1항에 따라 건강관리카드를 발급받은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에 준하는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다.

⑤ 건강관리카드의 서식, 발급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38조(질병자의 근로 금지·제한) ① 사업주는 감염병, 정신질환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에게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근로가 금지되거나 제한된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9조(유해·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①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높은 기압에서 하는 작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외에 작업과 휴식의 적정한 배분 및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0조(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등) ①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상당한 지식이나 숙련도가 요구되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격·면허의 취득 또는 근로자의 기능 습득을 위하여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자격·면허·경험·기능, 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 요건 및 지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에 관하여는 제21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으로 본다.

제141조(역학조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성 질환의 진단 및 예방, 발생 원인의 규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로자의 질환과 작업장의 유해요인의 상관관계에 관한 역학조사(이하 “역학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 또는 근로자대표,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

는 사람이 요구할 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역학조사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해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 후단에 따라 역학조사 참석이 허용된 사람의 역학조사 참석을 거부하거나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 후단에 따라 역학조사에 참석하는 사람은 역학조사 참석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기록 및 건강검진 결과,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정보, 「암관리법」에 따른 질병정보 및 사망원인 정보 등을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역학조사의 방법·대상·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9장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제142조(산업안전지도사 등의 직무) ① 산업안전지도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공정상의 안전에 관한 평가·지도

2. 유해·위험의 방지대책에 관한 평가·지도

3.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과 관련된 계획서 및 보고서의 작성

4. 그 밖에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산업보건지도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작업환경의 평가 및 개선 지도

2. 작업환경 개선과 관련된 계획서 및 보고서의 작성

3. 근로자 건강진단에 따른 사후관리 지도

4. 직업성 질병 진단(「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인 산업보건지도사만 해당한다) 및 예방 지도

5. 산업보건에 관한 조사·연구

6. 그 밖에 산업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의 업무 영역별 종류 및 업무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3조(지도사의 자격 및 시험) ① 고용노동부장관이 시행하는 지도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지도사의 자격을 가진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 안전 및 보건과 관련된 자격의 보유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지도사 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사 자격시험 실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 실시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지도사 자격시험 실시를 대행하는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⑤ 지도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다른 자격 보유자에 대한 시험 면제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4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도사 자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을 한 날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제145조(지도사의 등록) ① 지도사가 그 직무를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지도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제154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이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④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지도사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⑤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지도실적이 있는 지도사만이 제4항에 따른 갱신등록을 할 수 있다. 다만, 지도실적이 기준에 못 미치는 지도사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보수교육을 받은 경우 갱신등록을 할 수 있다.

⑥ 제2항에 따른 법인에 관하여는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146조(지도사의 교육) 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제143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이 직무를 수행하려면 제145조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 1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147조(지도사에 대한 지도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단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1. 지도사에 대한 지도·연락 및 정보의 공동이용체제의 구축·유지

2. 제14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도사의 직무 수행과 관련된 사업주의 불만·고충의 처리 및 피해에 관한 분쟁의 조정

3. 그 밖에 지도사 직무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48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지도사는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지도사는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9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지도사가 아닌 사람은 산업안전지도사, 산업보건지도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50조(품위유지와 성실의무 등) ① 지도사는 항상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지도사는 제14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직무와 관련하여 작성하거나 확인한 서류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제151조(금지 행위) 지도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뢰인에게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게 하는 행위

2. 의뢰인에게 법령에 따른 신고·보고, 그 밖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게 하는 행위

3.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에 관한 지도·상담

제152조(관계 장부 등의 열람 신청) 지도사는 제14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면 사업주에게 관계 장부 및 서류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신청이 제14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직무의 수행을 위한 것이면 열람을 신청받은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제153조(자격대여행위 등의 금지) 지도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지도사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제154조(등록의 취소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할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한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업무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4. 제142조에 따른 직무의 수행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5. 제145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6. 제148조제2항에 따른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7. 제150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지 아니한 경우
8. 제151조, 제153조 또는 제162조를 위반한 경우

제10장 근로감독관 등

제155조(근로감독관의 권한) ①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이하 “근로감독관”이라 한다)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출입하여 사업주, 근로자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질문을 하고,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의 검사 및 안전보건 점검을 하며,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사업장
2. 제21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48조제1항, 제74조제1항, 제88조제1항, 제96조제1항, 제100조제1항, 제120조제1항, 제126조제1항 및 제129조제2항에 따른 기관의 사무소

3.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사무소

4.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지도사의 사무소

② 근로감독관은 기계·설비등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한도에서 무상으로 제품·원재료 또는 기구를 수거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감독관은 해당 사업주 등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근로감독관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시행을 위하여 관계인에게 보고 또는 출석을 명할 수 있다.

④ 근로감독관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출입하는 경우에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하며, 출입 시 성명, 출입시간, 출입 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156조(공단 소속 직원의 검사 및 지도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65조제2항에 따라 공단이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단 소속 직원에게 사업장에 출입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검사 및 지도 등을 하게 하거나, 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에게 질문하거나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단 소속 직원이 검사 또는 지도업무 등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공단 소속 직원이 제1항에 따라 사업장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제155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감독관”은 “공단 소속 직원”으로 본다.

제157조(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① 사업장에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3일 이상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부상 또는 질병이 환자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의료법」 제1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치료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장 보칙

제158조(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지원) ① 정부는 사업주, 사업주단체, 근로자단체, 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 연구기관 등이 하는 산업재해 예방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이하 "보조·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보조·지원이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보조·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보조·지원의 전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지원을 받은 경우

2. 보조·지원 대상자가 폐업하거나 파산한 경우

3. 보조·지원 대상을 임의매각·훼손·분실하는 등 지원 목적에 적합하게 유지·관리·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5. 보조·지원 대상 기간이 끝나기 전에 보조·지원 대상 시설 및 장비를 국외로 이전한 경우

6. 보조·지원을 받은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조·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환수하되, 같은 항 제1호의 경우에는 지급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2호 중 보조·지원 대상자가 파산한 경우에 해당하여 취소한 경우는 환수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보조·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조·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보조·지원의 대상·방법·절차, 관리 및 감독,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취소 및 환수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59조(영업정지의 요청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의 영업정지나 그 밖의 제재를 할 것을 요청하거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의 발주 시 필요한 제한을 해당 사업자에게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38조, 제39조 또는 제63조를 위반하여 많은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중대한 피해를 주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2. 제5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근로자가 업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그 조치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요청 절차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60조(업무정지 처분을 대신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1조제4항(제74조제4항, 제88조제5항, 제96조제5항, 제126조제5항 및 제135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업무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업무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업무정지 처분을 대신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납세자의 인적사항

2. 사용 목적

3.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 금액

4. 과징금 부과사유 및 부과기준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및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1조(도급금지 등 의무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1. 제58조제1항을 위반하여 도급한 경우

2. 제58조제2항제2호 또는 제59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도급한 경우

3. 제60조를 위반하여 승인을 받아 도급받은 작업을 재하도급한 경우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도급 금액, 기간 및 횟수 등

2.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 이행을 위한 노력의 정도

3. 산업재해 발생 여부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과징금을 납부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내지 아니한 과징금의 연 100분의 6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기간 내에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및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과징금 및 가산금의 징수와 제4항에 따른 체납처분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2조(비밀 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42조에 따라 제출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검토하는 자
2. 제44조에 따라 제출된 공정안전보고서를 검토하는 자
3. 제47조에 따른 안전보건진단을 하는 자
4. 제84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하는 자
5. 제89조에 따른 신고 수리에 관한 업무를 하는 자
6. 제93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하는 자
7. 제98조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업무를 하는 자
8. 제108조제1항 및 제109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 또는 조사 결과를 검토하는 자
9. 제1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 등을 제출받는 자
10. 제112조제2항, 제5항 및 제7항에 따라 대체자료의 승인, 연장승인 여부를 검토하는 자 및 같은 조 제10항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대체자료를 제공받은 자
11.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건강진단을 하는 자
12. 제141조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는 자
13. 제145조에 따라 등록한 지도사

제163조(청문 및 처분기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21조제4항(제48조제4항, 제74조제4항, 제88조제5항, 제96조제5항, 제100조제4항, 제120조제5항, 제126조제5항, 제135조제6항 및 제140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지정의 취소

2. 제33조제4항, 제82조제4항, 제102조제3항, 제121조제4항 및 제154조에 따른 등록의 취소

3. 제58조제7항(제5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 제112조제8항 및 제117조제3항에 따른 승인의 취소

4. 제86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취소

5. 제99조제1항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의 취소

6. 제118조제5항에 따른 허가의 취소

7. 제158조제2항에 따른 보조·지원의 취소

② 제21조제4항(제33조제4항, 제48조제4항, 제74조제4항, 제82조제4항, 제88조제5항, 제96조제5항, 제100조제4항, 제120조제5항, 제121조제4항, 제126조제5항, 제135조제6항 및 제140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8조제7항, 제86조제1항, 제91조제1항, 제99조제1항, 제102조제3항, 제112조제8항, 제117조제3항, 제118조제5항 및 제154조에 따른 취소, 정지, 사용 금지 또는 시정명령의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64조(서류의 보존)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제2호의 경우 2년을 말한다)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의 선임에 관한 서류

2. 제24조제3항 및 제75조제4항에 따른 회의록

3.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

4. 제57조제2항에 따른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 등 기록

5. 제108조제1항 본문 및 제109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에 관한 서류

6. 제125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

7.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

②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의 업무를 위탁받은 안전인증기관 또는 안전검사기관은 안전인증·안전검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3년 동안 보존하여야 하고, 안전인증을 받은 자는 제84조제5항에 따라 안전인증대상기계등에 대하여 기록한 서류를 3년 동안 보존하여야 하며,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자율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2년 동안 보존하여야 하고, 제98조제1항에 따라 자율안전검사를 받은 자는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라 실시한 검사 결과에 대한 서류를 2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③ 일반석면조사를 한 건축물·설비소유주등은 그 결과에 관한 서류를 그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한 해체·제거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보존하여야 하고, 기관석면조사를 한 건축물·설비소유주등과 석면조사기관은 그 결과에 관한 서류를 3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④ 작업환경측정기관은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3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⑤ 지도사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5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⑥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제122조제3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작업에 관한 서류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30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경우 전산입력자료가 있을 때에는 그 서류를 대신하여 전산입력자료를 보존할 수 있다.

제165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4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
2. 제11조제3호에 따른 시설의 설치·운영 업무
3. 제13조제2항에 따른 표준제정위원회의 구성·운영
4.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
5.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교육
6. 제33조제1항에 따라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등록 업무
7. 제33조제2항에 따른 평가에 관한 업무
8. 제42조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접수·심사, 제4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른 확인
9. 제44조제1항 전단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의 접수, 제45조제1항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및 제46조제2항에 따른 확인
10. 제48조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진단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
11. 제58조제3항 또는 제5항 후단(제5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12. 제74조제3항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
13. 제8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
14. 제84조제4항 본문에 따른 안전인증의 확인
15. 제88조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
16.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 관한 업무
17. 제93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
18. 제96조제3항에 따른 안전검사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

19. 제98조제1항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

20. 제9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 교육 및 제100조제2항에 따른 자율안전검사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

21. 제101조에 따른 조사, 수거 및 성능시험

22. 제102조제1항에 따른 지원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등록

23. 제103조제1항에 따른 유해·위험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정보의 종합관리

24. 제105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위험성 평가에 관한 업무

25. 제1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등의 접수 업무

26. 제112조제1항·제2항·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부 비공개 승인 등에 관한 업무

27. 제116조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자료의 제공

28. 제120조제2항에 따른 석면조사 능력의 확인 및 석면조사기관에 대한 지도·교육 업무

29. 제120조제3항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

30. 제121조제2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안전성 평가 업무

31. 제126조제2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분석능력의 확인 및 작업환경측정기관에 대한 지도·교육 업무

32. 제126조제3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

33. 제127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의 신뢰성 평가 업무

34. 제135조제3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진단·분석능력의 확인 및 지도·교육 업무

35. 제135조제4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

36. 제136조제1항에 따른 유해인자별 특수건강진단 전문연구기관 지정에 관한 업무

37. 제137조에 따른 건강관리카드에 관한 업무

38. 제141조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

39. 제145조제5항 단서에 따른 지도사 보수교육

40. 제146조에 따른 지도사 연수교육

41. 제15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조·지원 및 보조·지원의 취소·환수 업무

③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비영리법인 또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66조(수수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32조제1항 각 호의 사람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게 하려는 사업주

2. 제4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심사받으려는 자

3. 제44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심사받으려는 자

4. 제58조제3항 또는 같은 조 제5항 후단(제5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받으려는 자

5. 제8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자

6. 제84조제4항에 따라 확인을 받으려는 자

7. 제93조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으려는 자

8. 제98조제1항에 따라 자율검사프로그램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

9. 제112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부 비공개 승인 또는 연장승인을 받으려는 자

10. 제118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

11. 제140조에 따른 자격·면허의 취득을 위한 교육을 받으려는 사람

12. 제143조에 따른 지도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13. 제145조에 따라 지도사의 등록을 하려는 자

14. 그 밖에 산업 안전 및 보건과 관련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공단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단의 업무 수행으로 인한 수익자로 하여금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2장 벌칙

제167조(벌칙) ①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9조제1항 또는 제63조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16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9조제1항, 제51조, 제54조제1항, 제117조제1항, 제118조제1항, 제122조제1항 또는 제157조제3항을 위반한 자

2. 제42조제4항 후단, 제53조제3항, 제55조제1항 또는 제118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제16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4조제1항 후단, 제63조, 제76조, 제81조, 제82조제2항, 제84조제1항, 제87조제1항, 제118조제3항, 제123조제1항, 제139조제1항 또는 제140조제1항을 위반한 자

2. 제45조제1항 후단, 제46조제5항, 제53조제1항, 제87조제2항, 제118조제4항, 제119조제4항 또는 제131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3. 제58조제3항 또는 같은 조 제5항 후단(제5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

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업무를 제165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로서 그 업무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한 자

4. 제8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 업무를 제165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로서 그 업무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한 자

5. 제93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 업무를 제165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로서 그 업무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한 자

6. 제98조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 업무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한 자

제17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1조제3항을 위반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자

2. 제56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대재해 발생 현장을 훼손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의 원인조사를 방해한 자

3.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자 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하도록 교사(敎唆)하거나 공모(共謀)한 자

4. 제65조제1항, 제80조제1항·제2항·제4항, 제85조제2항·제3항, 제92조제1항, 제141조제4항 또는 제162조를 위반한 자

5. 제85조제4항 또는 제92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6. 제101조에 따른 조사, 수거 또는 성능시험을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

제1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9조제1항·제2항, 제89조제1항, 제90조제2항·제3항, 제108조제2항, 제109조제2항 또는 제138조제1항·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90조제4항, 제108조제4항 또는 제109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25조제6항을 위반하여 해당 시설·설비의 설치·개선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132조제4항을 위반하여 작업장소 변경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제172조(벌칙) 제6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67조제1항 또는 제168조부터 제172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그 개인에게는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7조제1항의 경우: 10억원 이하의 벌금

2. 제168조부터 제172조까지의 경우: 해당 조문의 벌금형

제174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① 법원은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9조제1항 또는 제63조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에게 유죄의 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200시간의 범위에서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다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에는 형 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징역형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할 경우에는 형기 내에 각각 집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이 벌금형 또는 형의 집행유예와 병과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집행하고, 징역형 이상의 실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교정시설의 장이 집행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은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한다.

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

2.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수강명령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7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9조제2항에 따라 기관석면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 또는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한 자

2. 제124조제3항을 위반하여 건축물 또는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9조제3항 또는 제79조제1항을 위반한 자

2. 제54조제2항을 위반하여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7조제3항 전단을 위반하여 안전보건진단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또는 같은 항 후단을 위반하여 안전보건진단에 근로자대표를 참여시키지 아니한 자

2. 제57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3. 제141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4. 제141조제3항을 위반하여 역학조사 참석이 허용된 사람의 역학조사 참석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관계수급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2.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이사회에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3. 제41조제2항, 제42조제1항·제5항·제6항, 제44조제1항 전단, 제45조제2항, 제46조제1항, 제67조제1항, 제70조제1항, 제70조제2항 후단, 제71조제3항 후단, 제71조제4항, 제72조제1항·제3항·제5항(건설공사도급인만 해당한다), 제77조제1항, 제78조, 제85조제1항, 제93조제1항 전단, 제95조, 제99조제2항 또는 제10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한 자

4. 제47조제1항 또는 제49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5. 제82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타워크레인을 설치·해체하는 자

6. 제125조제1항에 따라 작업환경측정을 하지 아니한 자

7. 제129조제1항 또는 제1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 건강진단을 하지 아니한 자

8. 제15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검사·점검 또는 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본문, 제22조제1항 본문, 제24조제1항·제4항, 제25조제1항, 제26조, 제29조제1항·제2항, 제31조제1항,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37조제1항, 제44조제2항, 제49조제2항, 제50조제3항, 제62조제1항, 제66조, 제68조제1항, 제75조제6항, 제77조제2항, 제90조제1항, 제94조제2항, 제122조제2항, 제124조제1항(증명자료의 제출은 제외한다), 제125조제7항, 제132조제2항, 제137조제3항 또는 제145조제1항을 위반한 자

2. 제17조제3항, 제18조제3항 또는 제19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3. 제34조 또는 제1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 안전보건관리규정 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4. 제53조제2항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명령받은 사항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5. 제1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 화학물질의 명칭·함유량 또는 변경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6. 제110조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국외제조자로부터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힌 화학물질 외에는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이 없음을 확인하는 내용의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7. 제111조제1항을 위반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8. 제112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대체자료로 적은 자

9. 제112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비공개 승인 또는 연장승인 신청 시 영업비밀과 관련되어 보호사유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신청한 자

10. 제112조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위반하여 대체자료로 적힌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11. 제113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로서 같은 항 각 호의 업무를 거짓으로 수행한 자

12. 제113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해당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수입하는 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자

13. 제1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환경측정의 방법을 준수하지 아니한 사업주(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작업환경측정기관에 위탁한 경우는 제외한다)

14. 제125조제4항 또는 제132조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대표가 요구하였는데도 근로자대표를 참석시키지 아니한 자

15. 제125조제6항을 위반하여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해당 작업장 근로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16. 제155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2조제1항(제5호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위반하여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지 아니한 자

2. 제35조를 위반하여 근로자대표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자

3. 제40조, 제108조제5항, 제123조제2항, 제132조제3항, 제133조 또는 제149조를 위반한 자

4.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격이 있는 자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제출한 자

5. 제43조제1항 또는 제46조제2항을 위반하여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6. 제73조제1항을 위반하여 지도를 받지 아니한 자

7. 제84조제6항에 따른 자료 제출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8. 제108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109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위험성 조사 결과 또는 유해성·위험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9. 제111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의 변경 내용을 반영하여 제공하지 아니한 자

10. 제114조제3항을 위반하여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1. 제115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경고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12. 제119조제1항에 따라 일반석면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한 자

13. 제122조제3항을 위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자

1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5. 제125조제5항, 제132조제5항 또는 제134조제1항·제2항에 따른 보고, 제출 또는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제출 또는 통보한 자

16. 제155조제1항에 따른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자

17. 제156조제1항에 따른 검사·지도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18. 제164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 및 제175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5조제5호, 제110조부터 제116조까지, 제162조제9호 및 제10호, 제163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112조제8항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제165조제2항제25호부터 제27호까지, 제166조제1항제9호, 제175조제5항제3호(제114조제1항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및 제5호부터 제12호까지, 같은 조 제6항제2호(제35조제5호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한 해의 다음해 1월 1일 이후 발생한 산업재해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건설공사발주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업주가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건강진단에 따른 조치결과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3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건강진단부터 적용한다.

제6조(역학조사 참석 등에 관한 적용례) 제141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역학조사부터 적용한다.

제7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제출에 관한 특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종전의 제41조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 또는 변경한 자(대상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 중 그 대상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로 한정한다)는 제11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날까지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제110조제2항 본문에 따른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에 관한 자료(같은 항 제2호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힌 화학물질 외에는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이 없음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에 관한 서류를 말한다)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에 관한 특례) 제1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한 자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5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날까지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종전의 제41조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제공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사항에서 변경된 사항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야 한다.

제9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부 비공개 승인에 관한 특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종전의 제41조제2항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영업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 및 이를 함유한 제제의 사항을 적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제공한 자(대상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 자 중 그 대상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로 한정한다)는 제11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날까지 대체자료 기재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도급인가를 받은 사업주는 그 인가의 남은 기간이 3년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남은 기간 동안, 3년을 초과하거나 그 인가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이후 3년까지 제5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안전보건조정자의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건설공사가 행해지는 현장의 경우에는 제6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의 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까지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을 영위할 수 있다.

② 제8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까지는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로 하여금 타워크레인을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작업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13조(안전인증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4조의3에 따라 안전인증이 취소된 자는 제8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후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등에 관하여는 제110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개정규정 시행일 전까지 종전의 제11조제2항제4호, 제41조, 제63조(제41조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제65조제2항제12호, 제72조제4항제3호(제41조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같은 조 제5항제1호(제41조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및 제2호, 같은 조 제6항제1호(제11조제2항제4호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및 제8호에 따른다.

제15조(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5조의3(종전의 제16조제3항, 제30조의2제3항, 제34조의5제4항, 제36조제10항, 제42조제10항 및 제43조제1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안전관리대행기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법률 제4220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일인 1990년 7월 14일 당시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안전관리대행기관 및 보건관리대행기관은 제2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공단은 법률 제4220호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 지정교육·검사·측정 또는 진단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17조(산업위생지도사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1882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인 2014년 3월 13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산업위생지도사는 이 법에 따른 산업보건지도사로 본다.

제18조(지도사 연수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1882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인 2014년 3월 13일 전에 등록한 지도사는 제14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연수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9조(벌칙과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제110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개정규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제175조제5항제3호(제114조제1항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및 제5호부터 제12호까지, 같은 조 제6항제2호(제35조제5호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8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로 한다.

②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6항제2호 본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로 한다.

③ 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8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으로 한다.

④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제1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를 각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3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로 한다.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대행기관”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전문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를 각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로 한다.

제31조제1항제1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로 한다.

제36조 전단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제16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및 제18조”로 한다.

제40조제1항제1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로 한다.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제1항”으로, “같은 법 제35조제1항”을 “같은 법 제89조제1항”으로, “같은 법 제36조제1항”을 “같은 법 제9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제1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제35조제1항”을 “「산

업안전보건법」 제84조제1항·제89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제1항”으로, “같은 법 제35조제1항”을 “같은 법 제89조제1항”으로 한다.

제48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를 각각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1항”으로 한다.

제52조제2항제3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제1항”으로 한다.

제55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20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로 한다.

⑤ 도시가스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로 한다.

⑥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제4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의3”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로 한다.

⑦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5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제4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4항”으로, “같은 법 제49조의2제3항”을 “같은 법 제45조제1항”으로 한다.

제16조제6항제8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제1항”으로 한다.

⑧ 산업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제1항”으로, “제35조제1항”을 “같은 법 제89조제1항”으로 한다.

⑨ 석면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 본문”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2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 본문”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7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제5항”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단서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1항 또는 제32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 또는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으로 한다.

제26조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 및 제38조의3”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 제120조 및 제123조”로 한다.

제27조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제1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22조제1항”으로 한다.

제30조의2제1항제2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5제1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2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5제3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24조제3항”으로 한다.

⑩ 석면피해구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제1항”으로 한다.

⑪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5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으로 한다.

⑫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제14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제4항”을 “「산업안전

보건법」 제42조제4항”으로, “같은 법 제49조의2제3항”을 “같은 법 제45조제1항”으로 한다.

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⑭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전단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및 제43조”로 한다.

⑮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4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의 규정”을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 産業安全保健法 또는 同法에 의한”을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으로 한다.

제35조의 제목 중 “産業安全保健法”을 “「산업안전보건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産業安全保健法 第2條第3號의 規定에 의한”을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4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同法 第31條第2項의 規定”을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2항”으로, “同項중”을 “같은 항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産業安全保健法 第5條, 第43條第5項(作業場所의 변경, 作業의 轉換 및 勤勞時間 短縮의 경우에 한한다), 第43條第6項 但書, 第52條第2項”을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제132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작업장소 변경, 작업 전환 및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로 한정한다), 제157조제3항”으로, “同法 第2條第3號의 規定에 의한”을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産業安全保健法 第43條의 規定에 의한”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同法 第43條第6項의 規定에 의하여”를 “같은 법 제132조제2항에 따라”로,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産業安全保健法 第4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및 제130조에 따라”로, “同法 第2條第3號의 規定에 의한”을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産業安全保健法 第43條第6項의 規定에 의하여”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제2항에 따라”로,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産業安全保健法”을 “「산업안전보건법」”으로, “同法을 위반한”을 “같은 법을 위반한”으로, “同法 第2條第3號의 規定에 의한”을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으로 한다.

⑯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3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제1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제1항”으로 한다.

⑰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른”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제1항·제3항 또는 제111조에 따라”로 한다.

제21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